

---

# 무배당 더블플러스 건강보험(2001)

## 약 관

---

## 목차

|               |    |
|---------------|----|
| 가입자 유의사항      | 10 |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 14 |
| 주요내용 요약서      | 16 |
| 보험용어 해설       | 19 |

## • 상황별 목차 •

※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해당 약관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조항번호는 보통약관 기준입니다.

| 구 분            | 상 황                                   | 해당 조항                                                                                             |
|----------------|---------------------------------------|---------------------------------------------------------------------------------------------------|
| ❶ 용어 정의        | 이 계약에서 쓰이는 용어를 알고 싶어요.                | 제2조(용어의 정의) ..... 22                                                                              |
| ❷ 보험금의 지급      |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24<br>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4<br>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5         |
|                | 보험금은 청구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26                                                                           |
| ❸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무엇인가요?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29<br>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30                                          |
|                |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 제18조(청약의 철회) ..... 33                                                                             |
| ❹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어요.<br>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싶어요.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37                                                                         |
|                | 보험료 납입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39<br>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납입) ..... 39                                 |
| ❺ 보험료의 납입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었어요.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45<br>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46 |
|                |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49<br>제35조(해지환급금) ..... 50                                  |

### 보험계약 구분

- 1종 : 표준형, 실속형
- 2종 : 표준형, 고급형
- 3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실속형
- 4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고급형

## 보 통 약 관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           |
|------------------------------|-----------|
| <b>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b>       | <b>22</b> |
| 제1조(목적)                      | 22        |
| 제2조(용어의 정의)                  | 22        |
| <b>제2관 보험금의 지급</b>           | <b>24</b> |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24        |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24        |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25        |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 26        |
|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26        |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26        |
|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27        |
| 제10조(주소변경통지)                 | 28        |
|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 28        |
|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28        |
| <b>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b> | <b>29</b> |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 29        |
|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 29        |
|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30        |
|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 32        |
| <b>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b>      | <b>33</b> |
|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 33        |
| 제18조(청약의 철회)                 | 33        |
|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34        |
| 제20조(계약의 무효)                 | 36        |

## 목차

|                                         |           |
|-----------------------------------------|-----------|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37        |
| 제22조(보험나이 등)                            | 38        |
| 제23조(계약의 소멸)                            | 38        |
| <b>제5관 보험료의 납입</b>                      | <b>39</b> |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39        |
|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39        |
|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 40        |
| 제26-1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41        |
| 제26-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41        |
| 제26-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42        |
|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42        |
| 제27-1조(“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43        |
| 제27-2조(“질병80%이상후유장해”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43        |
| 제27-3조(“암(유사암 제외)”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44        |
|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45        |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45        |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46        |
|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47        |
| <b>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b>             | <b>49</b> |
|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49        |
|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49        |
|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49        |
| 제35조(해지환급금)                             | 50        |
| 제36조(보험계약대출)                            | 50        |
| 제37조(배당금의 지급)                           | 51        |
| <b>제7관 분쟁의 조정 등</b>                     | <b>52</b> |
| 제38조(분쟁의 조정)                            | 52        |
| 제39조(관할법원)                              | 52        |
| 제40조(소멸시효)                              | 52        |
| 제41조(약관의 해석)                            | 52        |
|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52        |
|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53        |
| 제44조(개인정보보호)                            | 53        |

|                     |    |
|---------------------|----|
| 제45조(준거법)           | 53 |
|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53 |

## 특 별 약 관

|                                       |           |
|---------------------------------------|-----------|
| <b>I. 상해관련 특별약관</b>                   | <b>56</b> |
| 1-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 56        |
| 1-2.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57        |
| 1-3.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59        |
| 1-4.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61        |
| 1-5.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특별약관        | 62        |
| 1-6.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64        |
| 1-7.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66        |
| 1-8. 일반상해수술비 특별약관                     | 69        |
| 1-9.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71        |
| 1-10.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특별약관              | 72        |
| 1-11.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 73        |
| 1-12.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 76        |
| 1-13.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77        |
| 1-14.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79        |
| 1-15.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 81        |
| 1-16.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82        |
| 1-17. 상해흉터성형수술비 특별약관                  | 84        |
| 1-1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86        |
| 1-19.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 88        |
| <b>II. 질병관련 특별약관</b>                  | <b>91</b> |
| 2-1. 질병사망 특별약관                        | 91        |
| 2-2. 암사망 특별약관                         | 92        |
| 2-3. 질병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94        |
| 2-4.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97        |
| 2-5. 질병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99        |
| 2-6.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 특별약관            | 101       |
| 2-7.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 104       |
| 2-8. 11대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 106       |

## 목차

|                                          |     |
|------------------------------------------|-----|
| 2-9.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 특별약관                    | 109 |
| 2-10.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 111 |
| 2-11.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113 |
| 2-12.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 115 |
| 2-13.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 117 |
| 2-14. 양성뇌종양진단비 특별약관                      | 118 |
| 2-15.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120 |
| 2-1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 122 |
| 2-17.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124 |
| 2-18.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 126 |
| 2-19.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128 |
| 2-20.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 129 |
| 2-21. 중증루푸스신염진단비 특별약관                    | 131 |
| 2-22.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특별약관                  | 134 |
| 2-23. 요로결석진단비 특별약관                       | 136 |
| 2-24. 대상포진진단비 특별약관                       | 138 |
| 2-25. 대상포진뇌병진단비 특별약관                     | 140 |
| 2-26. 통풍진단비 특별약관                         | 141 |
| 2-27. 알츠하이머병진단비 특별약관                     | 143 |
| 2-28. 파킨슨병진단비 특별약관                       | 146 |
| 2-29.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48 |
| 2-30.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특별약관             | 150 |
| 2-31.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53 |
| 2-32.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156 |
| 2-33.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59 |
| 2-34.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62 |
| 2-35.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64 |
| 2-36. 부인과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67 |
| 2-37.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69 |
| 2-38.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71 |
| 2-39. 암입원일당(요양병원)(4일이상90일한도) 특별약관        | 176 |
| 2-40. 뇌혈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80 |
| 2-41. 뇌졸중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82 |
| 2-42.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85 |
| 2-43.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87 |

|                                                        |     |
|--------------------------------------------------------|-----|
| 2-44.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190 |
| 2-45.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192 |
| 2-46. 73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196 |
| 2-47. 3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199 |
| 2-48. 29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201 |
| 2-49. 7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204 |
| 2-50. 남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206 |
| 2-51. 여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208 |
| 2-52. 암수술비 특별약관                                        | 211 |
| 2-53.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비 특별약관                              | 214 |
| 2-54.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인한<br>자궁적출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17 |
| 2-55.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220 |
| 2-56. 뇌졸중수술비 특별약관                                      | 222 |
| 2-57.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224 |
| 2-58.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특별약관                                  | 226 |
| 2-59. 심장판막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28 |
| 2-60. 관상동맥우회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29 |
| 2-61. 관상동맥성형수술비(PTCA)(최초1회한) 특별약관                      | 231 |
| 2-62.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33 |
| 2-6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34 |
| 2-64. 충수염(맹장염)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37 |
| 2-65. 치핵수술비 특별약관                                       | 239 |
| 2-66.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 241 |

### Ⅲ.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245

|                          |     |
|--------------------------|-----|
| 3-1.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특별약관     | 245 |
| 3-2. 중증치매진단비 특별약관        | 248 |
| 3-3. 장기요양진단비(1급) 특별약관    | 251 |
| 3-4. 장기요양진단비(1~2급) 특별약관  | 254 |
| 3-5. 장기요양진단비(1~4급) 특별약관  | 257 |
| 3-6.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 260 |
| 3-7.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    | 263 |
| 3-8. 유방절제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66 |
| 3-9. 갑스치료비 특별약관          | 268 |
| 3-10. 수술비(1~5종) 특별약관     | 270 |

## 목차

|                             |     |
|-----------------------------|-----|
| 3-11. 각막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72 |
| 3-12. 5대장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274 |

## IV. 제도성 특별약관 277

|                               |     |
|-------------------------------|-----|
| 4-1.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 277 |
| 4-2.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277 |
| 4-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278 |
| 4-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279 |
| 4-5.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281 |
| 4-6.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283 |
| 4-7. 전자서명 특별약관                | 287 |

## 별 표

|                                          |     |
|------------------------------------------|-----|
| 【별표 1】 장해분류표                             | 290 |
| 【별표 2】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I                  | 315 |
| 【별표 3】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II                 | 316 |
| 【별표 4】 골절 등급분류기준표                        | 317 |
| 【별표 5】 골절 분류표                            | 319 |
| 【별표 6】 5대골절 분류표                          | 320 |
| 【별표 7】 화상 분류표                            | 321 |
| 【별표 8】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 322 |
| 【별표 9】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323 |
| 【별표10】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 324 |
| 【별표11】 11대특정암 분류표                        | 325 |
| 【별표12】 유방암 및 생식기암 분류표                    | 326 |
| 【별표13】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 327 |
|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 328 |
|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329 |
| 【별표16】 뇌혈관질환 분류표                         | 330 |
| 【별표17】 뇌졸중 분류표                           | 331 |
| 【별표18】 뇌출혈 분류표                           | 332 |
| 【별표19】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 333 |
| 【별표20】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334 |
| 【별표21】 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분류표 | 335 |
| 【별표22】 요로결석 분류표                          | 336 |

|                                 |     |
|---------------------------------|-----|
| 【별표23】 대상포진 분류표                 | 337 |
| 【별표24】 대상포진눈병 분류표               | 338 |
| 【별표25】 통풍 분류표                   | 339 |
| 【별표26】 남성16대질병 분류표              | 340 |
| 【별표27】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           | 343 |
| 【별표28】 여성16대질병 분류표              | 345 |
| 【별표29】 부인과질병 분류표                | 348 |
| 【별표30】 여성5대생활질환 분류표             | 349 |
| 【별표31】 식중독 분류표                  | 350 |
| 【별표32】 7대질병 분류표                 | 351 |
| 【별표33】 특정15대질병 분류표              | 353 |
| 【별표34】 다발성15대질병 분류표             | 356 |
| 【별표35】 35대생활질환 분류표              | 358 |
| 【별표36】 치핵 분류표                   | 362 |
| 【별표37】 13대질병 분류표                | 363 |
| 【별표38】 19대질병 분류표                | 365 |
| 【별표39】 특정9대질병 분류표               | 367 |
| 【별표40】 다빈도20대질병 분류표             | 369 |
| 【별표41】 남성특정질병 분류표               | 372 |
| 【별표42】 여성특정질병 분류표               | 374 |
| 【별표43】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        | 376 |
| 【별표44】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 분류표 | 377 |
| 【별표45】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 378 |
| 【별표46】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 379 |
| 【별표47】 알츠하이머병 분류표               | 380 |
| 【별표48】 파킨슨병 분류표                 | 381 |
| 【별표49】 유방절제수술 분류표               | 382 |
| 【별표50】 1~5종수술 분류표               | 383 |
| 【별표51】 특정부위 분류표                 | 391 |
| 【별표52】 특정질병 분류표                 | 393 |
| 【별표5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395 |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 ◎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 건강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 ◎ 타인을 위한 계약(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 구분

- 1종 : 표준형, 실속형
- 2종 : 표준형, 고급형
- 3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실속형
- 4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고급형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 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미지급형(3, 4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1, 2종)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1, 2종)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 계약의 해지시점      | 해지환급금미지급형(3, 4종) |
|---------------|------------------|
| 보험료 납입기간 중    | 없음               |
|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이후 | 표준형 해지환급금의 100%  |

- 회사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3, 4종)의 계약을 체결할 때 동상품 표준형(1, 2종)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암 관련 보장

-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 특정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 1년, 2년 등)이내

인 경우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 입원 관련 담보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수술 관련 담보

-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경우(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바늘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상해 관련 담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련 유의사항(2, 4종에 한함)

### 보험계약 구분

- 1종 : 표준형, 실속형
- 2종 : 표준형, 고급형
- 3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실속형
- 4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고급형

### ◎ 1, 3종(실속형) : 해당사항 없음

### ◎ 2, 4종(고급형) : 보험료 납입면제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①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 ②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③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④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⑤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보험사기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보험사기의 정의

- 보험금 지급요건이 되는 재해, 상해, 도난, 방화 또는 기타의 손실을 의도적으로 연출하거나 조작한 후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경성사기) 또는 보험사고 발생 시 합법적인 청구를 과장, 확대하거나 계약 체결 시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등의 행위(연성사기)를 말하며, 이를 공모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간주됩니다.

### ◎ 보험사기처벌에 관한 사항

- 보험사기는 「형법 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1)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 ▶ 해지환급금

A씨는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민원 제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위험변경

A씨는 보험가입당시 사무직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직업이 변경되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보험금 수령시 제한을 받음에 따른 민원 제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운전 목적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운전여부가 변경(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비 특별약관(가입금액 10만원)을 가입하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자전거 사고로

- ① 팔과 다리에 골절 등 상해를 동시에 입어 각 부위에 상해수술(내고정물 삽입)을 받았으며,
- ② 지난 10월에는 팔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이에 A씨는 세 가지 수술(팔수술, 다리수술, 내고정물 제거수술) 각각에 대한 보험금 30만원을 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보험금 10만원을 지급하였다.

Q. 왜 팔과 다리의 수술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A. 상해수술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 팔과 다리 수술 중 하나의 보험금(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Q. 왜 팔에 삽입되어 있는 내고정물 제거수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은 건가요?

A.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해수술(내고정물 삽입술) 이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역시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이 초과된 계약 및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3. 계약취소

계약청약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 4. 계약의 무효(신체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5. 계약의 소멸(신체 관련)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정하는 14일이상의 기간을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2)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운전 목적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포함)하거나, 운전여부가 변경(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포함)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3)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셔야 합니다.

## 9.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을 따릅니다.

---

## 보험용어 해설

---

###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 보험계약 관계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신체손해 보장〉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 ◎ 보험금

〈신체손해 보장〉

-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 연도 보험계약 해당 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 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무배당 더블플러스 건강보험(2001)**  
**보통약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나. 장애: 【별표1】『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상태를 말합니다.
-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5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나누어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서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0조(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 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법정상속인】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합니다.

## 제12조(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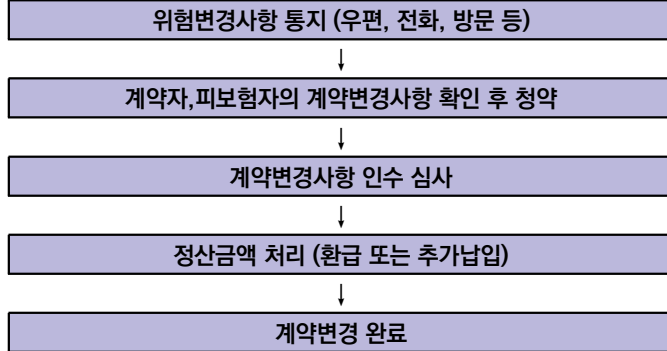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を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다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18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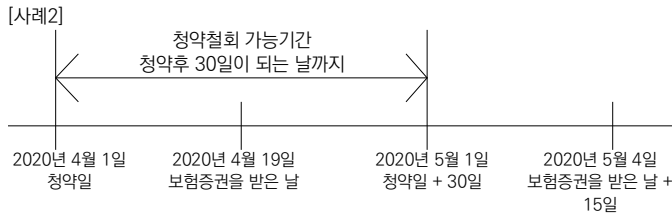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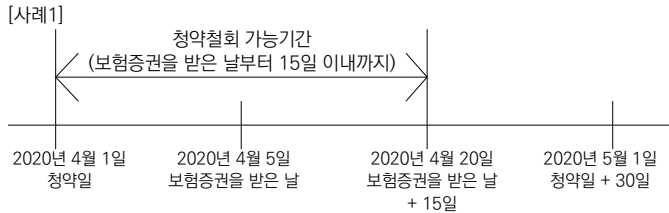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한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 가능기간】



일반적으로 계약자는 [사례1]의 경우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2]의 경우처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2020년 5월 4일)이 청약한 날부터 30일(2020년 5월 1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2020년 5월 1일까지로 합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

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 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심신상실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 【심신박약자】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다만 해지환급금미지급형(3, 4종)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22조(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9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20년 4월 13일  
⇒ 2020년 4월 13일 - 1989년 10월 2일 = 30년 6월 11일 = 31세

## 제23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 보험계약 구분

- 1종 : 표준형, 실속형
- 2종 : 표준형, 고급형
- 3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실속형
- 4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고급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2종(표준형, 고급형) 또는 4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고급형) 가입시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2.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이하 ‘질병80%이상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되었을 경우
  3.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6-1조(“암(유사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4. 제26-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5. 제26-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 ② 제1항 3호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납입면제 제외】

1종(표준형, 실속형) 및 3종(해지환급금미지급형, 실속형)의 경우는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26-1조(“암(유사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약관에서 “암(유사암 제외)”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별표9】『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26-2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약관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별표17】『뇌졸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26-3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약관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별표20】『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27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을 경우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제1항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27-1조(“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제1항 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결정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이미 이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제27-2조(“질병80%이상후유장해”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제1항 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

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⑤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결정된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이미 이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5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를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 제27-3조(“암(유사암 제외)”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사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사암 제외)”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2, 4종에 한함)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제1항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29조(보험료의 납

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1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28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6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서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

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 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31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 제3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3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35조(해지환급금)

#### 보험계약 구분

- 1종 : 표준형, 실속형
- 2종 : 표준형, 고급형
- 3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실속형
- 4종 : 해지환급금미지급형, 고급형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5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지환급금미지급형(3, 4종)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표준형(1, 2종)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표준형(1, 2종)의 해지환급금과 동일합니다.
2. 1.에서 해지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1, 2종)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3. 회사는 해지환급금미지급형(3, 4종) 가입 시 표준형(1, 2종)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제36조(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8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3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41조(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44조(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제45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제46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무배당 더블플러스 건강보험(2001) 특별약관

---

## I. 상해관련 특별약관

### 1-1.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2.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 조산원
-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사례】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애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애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애(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애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애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3.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50%이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

분류표”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 조산원
  -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4.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80일 한도로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5. 일반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 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10일 한도로 일반상해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6.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중환자실 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측정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80일 한도로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7.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3조4(상급종합병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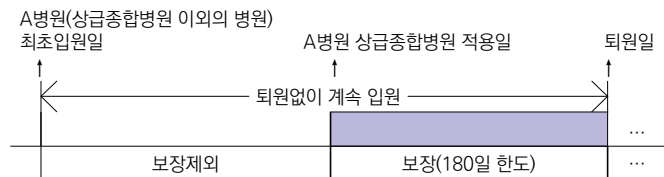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80일 한도로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마지막 입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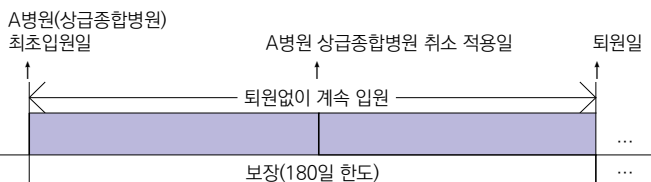
### 〈보상예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일반상해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보상예시〉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8. 일반상해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금은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

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9.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2】『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I』 참조)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0.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5】『골절 분류표』참조)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 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치아파절포함)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1.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Ⅱ”(【별표3】『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Ⅱ』참조)에서 정하는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되고 【별표4】『골절 등급분류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등급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각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등급별 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골절등급 | 지급기준금액            | 지급금액          |
|------|-------------------|---------------|
| 1급   | 보험가입금액<br>10만원 기준 | 10만원(연간 1회한도) |
| 2급   |                   | 4만원(연간 1회한도)  |
| 3급   |                   | 3만원(연간 1회한도)  |
| 4급   |                   | 2만원(연간 1회한도)  |
| 5급   |                   | 1만원(연간 1회한도)  |

- ② 제1항의“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연간 1회”의 한도 산정의 기준일은 사고일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연간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정한 “연간”에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이 지급된 등급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등급별 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 예시】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5급,연간1회한) 가입금액 100만원 가입시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 10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사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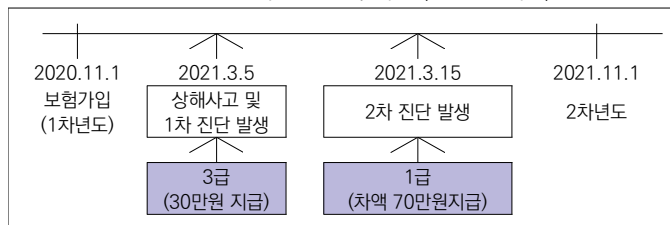
하나의 상해사고로 골절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골절과 4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둘 중 높은 등급인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 (30만원 지급)

### [사례2]

하나의 상해사고로 다음과 같이 진단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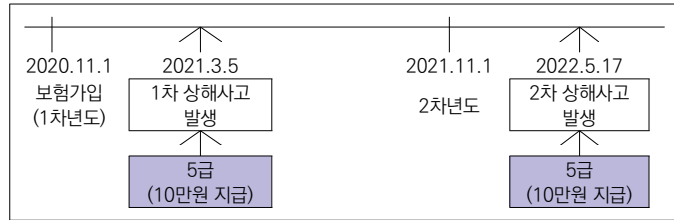
- 하나의 상해사고로 골절등급 3급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시  
⇒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30만원 지급)
- 이후 같은 상해사고에 대한 2차 진단으로 1급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시  
⇒ 1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인 100만원에서 이미 지급된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30만원을 차감한 금액 지급 (70만원 지급)



### [사례3]

다른 해에 걸쳐 두 번 이상의 상해사고 발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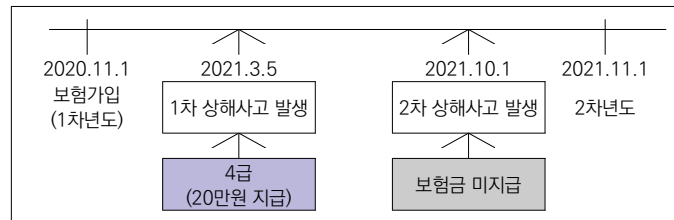
- 첫 해 상해사고로 골절등급 5급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시  
⇒ 5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10만원 지급)
- 다음 해 상해사고로 골절등급 5급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시  
⇒ 5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10만원 지급)



#### [사례4]

같은 해에 두 번 이상 상해사고 발생시

- 1차 상해사고로 골절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시  
⇒ 4급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20만원 지급)
- 또다른 상해사고로 골절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시  
⇒ 등급별 각 연간1회한 지급이므로 보험금 미지급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2. 5대골절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별표6】『5대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3.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분류표”(【별표5】『골절 분류표』참조)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금은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4. 5대골절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 분류표”(【별표6】『5대골절 분류표』참조)에서 정하는 5대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5대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금은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5. 화상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별표7】『화상 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6. 화상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분류표”(【별표7】『화상 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는 화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금은 매 사고시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7. 상해흉터성형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 결과로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상해흉터성형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점에 만15세 미만일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
| 상해흉터성형수술시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br>(단, 3cm 이상에 한함)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상지 또는 하지에 대하여는 3cm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4조(“안면부” 등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안면부”, “상지”, “하지”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말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반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2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

드립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뇌손상”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별표8】『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8】『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맹장),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 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 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1-19.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이하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

다)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II. 질병관련 특별약관

### 2-1. 질병사망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 암사망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사망”의 원인 및 “암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별표9】『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중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 질병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질병후유장해

(3~100%)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

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사례】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손목관절에 심한 장해(지급률 20%)가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상해로 손목관절에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지급률 30%)에는 보험가입 후 발생한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0%에서 보험가입 전 발생한 장해지급률 20%를 차감한 1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 질병5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

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5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6. 암진단비(유방암및생식기암제외)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암진단비(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br>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100%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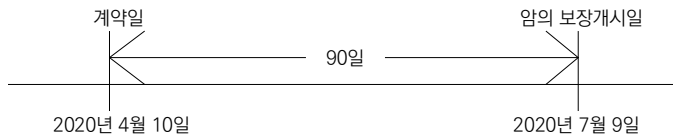
유방암, 생식기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별표9】『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유방암 및 생식기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유방암 및 생식기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암 및 생식기암”(【별표12】『유방암 및 생식기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진단비(유방암 및 생식기암 제외)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7. 고액치료비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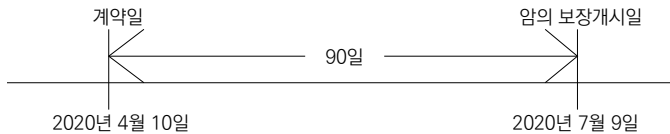
| 구 분                    |                | 지급금액                |
|------------------------|----------------|---------------------|
| 고액치료비암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고액치료비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별표13】『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8. 11대특정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11대특정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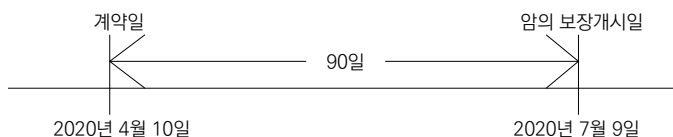
| 구 분                    |                   | 지급금액                   |
|------------------------|-------------------|------------------------|
| 11대특정암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100% |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11대특정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11대특정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1대특정암”(【별표11】『11대특정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1대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11대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9. 유방암및생식기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유방암 및 생식기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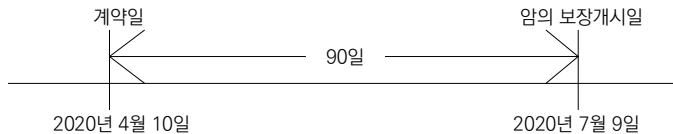
| 구 분                        |                   | 지급금액                   |
|----------------------------|-------------------|------------------------|
| 유방암 및 생식기암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100% |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및 생식기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

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유방암 및 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방암 및 생식기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암 및 생식기암”(【별표12】『유방암 및 생식기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방암 및 생식기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방암 및 생식기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 및 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생식기암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0. 유사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br>진단시<br>(각각 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별표14】『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별표1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제자리암진단비 및 경계성종양진단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1.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뇌혈관질환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별표16】『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2.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뇌졸중진단시(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뇌졸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별표17】『뇌졸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3. 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출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뇌출혈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뇌출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별표18】『뇌출혈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4. 양성뇌종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양성뇌종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구 분            | 지급금액                |
|-----------------------|----------------|---------------------|
| 양성뇌종양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

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양성뇌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 개내(머리 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양성뇌종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성뇌종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

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5.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허혈성심장질환<br>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허혈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별표19】『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6.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급성심근경색증<br>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별표20】『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7. 말기폐질환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폐질환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말기폐질환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폐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말기폐질환”(【별표21】『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1항에 포함되고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각호의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호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동일한 상태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이하
- ③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8. 말기간경화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간경화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지급금액                               |
|-----------------------|------------------------------------|
| 말기간경화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간경화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말기간경화”이라 함은 만성 말기 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 ②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 ③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 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19. 말기신부전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말기신부전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말기신부전증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말기신부전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신장병(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

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0.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br>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서 호중구 수가 200/mm<sup>3</sup>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 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mm<sup>3</sup>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sup>3</sup>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sup>3</sup>미만
-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④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1. 중증루푸스신염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중증루푸스신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중증루푸스신염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중증루푸스신염<br>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루푸스신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중증루푸스신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루푸스신염”이라 함은 전신성홍반성루푸스라는 자가면역성 장애에 의한 신장질환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루푸스신염”이라 함은 사구체여과율(GFR)이 60ml/min/1.73m<sup>2</sup> 미만인 심각한 신장기능 손상을 동반해야 하며, 신장생체검사에 의해 아래의 루푸스신염 ISN/RPS(International Society of Nephrology and Renal Pathology Society) 분류법(2003)에 따른 ClassⅢ, Ⅳ, Ⅴ 또는 Ⅵ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 【루푸스신염 ISN/RPS 분류법】

- ClassⅠ : 경미한 사구체간질 루푸스신염  
(Minimal mesangial lupus nephritis)
- ClassⅡ : 사구체간질 증식성 루푸스신염  
(Mesangial proliferative lupus nephritis)
- ClassⅢ : 초점성 루푸스신염(Focal lupus nephritis)
- ClassⅣ : 미만성 루푸스신염(Diffuse lupus nephritis)
- ClassⅤ : 막성 루푸스신염(Membranous lupus nephritis)
- ClassⅥ : 진행성 루푸스신염(Advanced sclerosing lupus nephritis)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장생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근거로 전문의에 의해 명확하게 진단되어야 하며, 다음의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야 합니다.
1. 비정상적 소변검사 결과
  2.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 ④ “중증루푸스신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해당 분야(류마티스내과, 신장내과 등)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루푸스신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루푸스신염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2.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특정류마티스관절염<br>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이라 함은 다음의 ‘가’와 ‘나’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

| 대상질병                        | 분류번호   |
|-----------------------------|--------|
|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             | M05    |
| [J99.0* : 류마티스 폐질환(M05.1+)] | J99.0* |
|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 M06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위의 질병 이외에 추가로 위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나. 항류마티스약제(Disease modifying anti rheumatic drugs, DMARDs)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야 합니다.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 받았거나 치료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아세틸살리실산제제 등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제외됩니다. 다만, 임상학적으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위해 항류마티스약제(DMARDs)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되어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됨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1) 부작용 등의 이유로 인하여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받을 수 없는 경우
- 2) 항류마티스약제(DMARDs)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대체 치료방법의 등장으로 인하여 항류마티스약제(DMARDs)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

- ②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류마티스관절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류마티스관절염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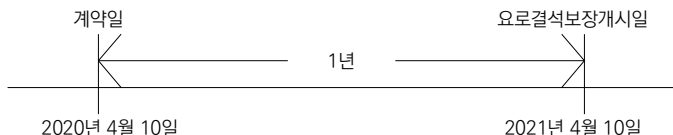
## 2-23. 요로결석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요로결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요로결석의 보장개시일[예시]】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요로결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요로결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요로결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요로결석”(【별표22】『요로결석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요로결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요로결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요로결석”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요로결석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4. 대상포진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대상포진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대상포진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대상포진”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대상포진”(【별표23】『대상포진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대상포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상포진”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5. 대상포진눈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대상포진눈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대상포진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대상포진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대상포진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대상포진눈병”(【별표24】『대상포진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대상포진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상포진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노병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6. 통풍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통풍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통풍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통풍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통풍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풍”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통풍”(【별표25】『통풍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통풍”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혈청 요산 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 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통풍”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풍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7. 알츠하이머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알츠하이머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알츠하이머병<br>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알츠하이머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알츠하이머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알츠하이머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알츠하이머병”(【별표47】『알츠하이머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알츠하이머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뇌파검사(EEG),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⑤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항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알츠하이머병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8. 파킨슨병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파킨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파킨슨병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파킨슨병 진단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파킨슨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파킨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파킨슨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파킨슨병”(【별표48】『파킨슨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파킨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

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도파민-단일광자방출단층촬영(SPECT), 파킨슨병의 평가도구(UPDRS),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파킨슨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⑤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항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파킨슨병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29.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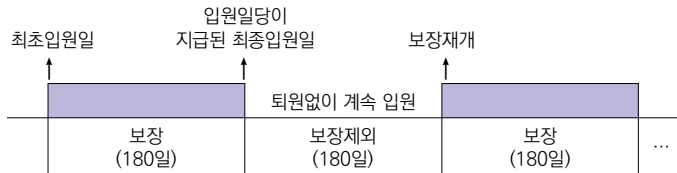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에는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80일 한도로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0.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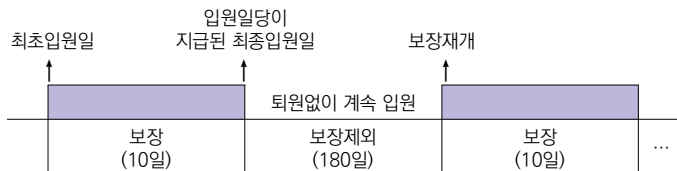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0일 한도로 보험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1.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엠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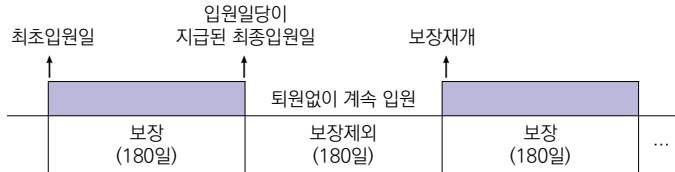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80일 한도로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2.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규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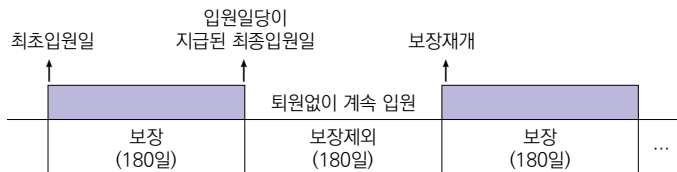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상급종합병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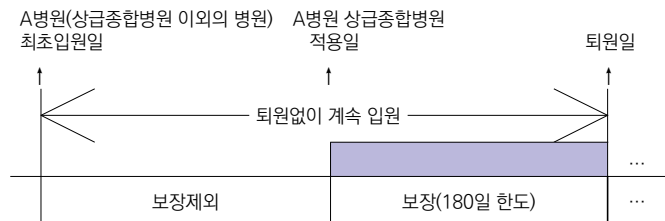
〈예시〉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80일 한도로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의 마지막 입원일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보상예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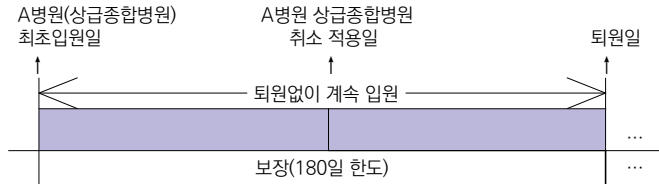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상급종합병원입원일당을 지급합니다.



**〈보상예시〉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3.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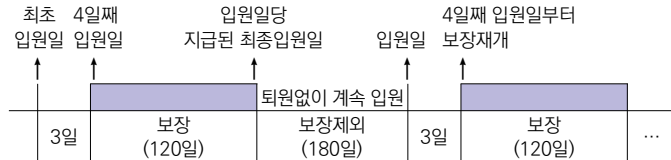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남성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남성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남성16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남성16대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남성16대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남성16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남성16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남성16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남성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남성16대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남성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남성16대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남성16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남성16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남성16대질환”(【별표26】『남성16대질환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남성16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4.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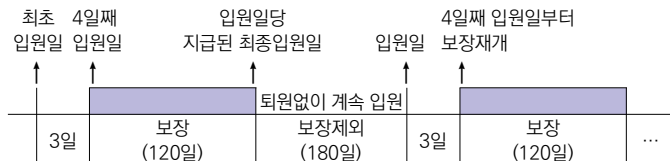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별표27】『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

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5.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1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여성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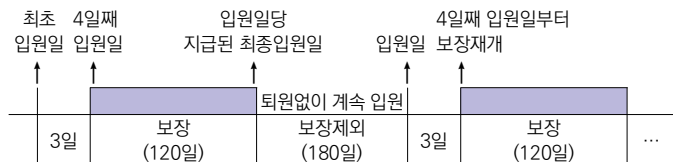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여성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여성16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여성16대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여성16대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여성16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여성16대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여성16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여성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여성16대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여성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여성16대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여성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16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16대질병”(【별표28】『여성16대질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여성16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6. 부인과질병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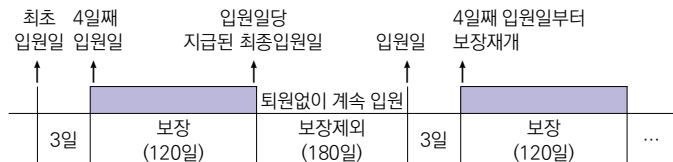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부인과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인과질병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부인과질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부인과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부인과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인과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부인과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부인과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부인과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부인과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부인과질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부인과질병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부인과질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부인과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부인과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부인과질병”(【별표29】『부인과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부인과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부인과질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7.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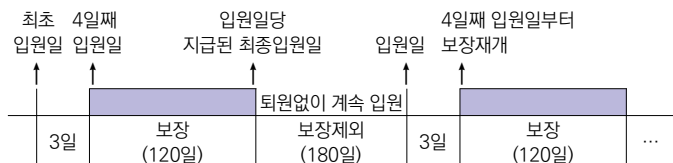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5대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여성5대생활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여성5대생활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여성5대생활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여성5대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여성5대생활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여성5대생활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여성5대생활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여성5대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5대생활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5대생활질환”(【별표30】『여성5대생활질환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여성5대생활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

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여성5대생활 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 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38.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구 분                                           | 지급금액                |
|-----------------------------------------------|---------------------|
| 암 입원시(4일이상 120일한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입원시<br>(4일이상 120일한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 나이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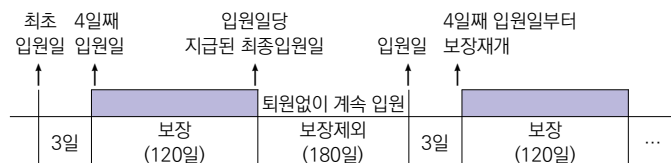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 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

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 생물(암)”(【별표9】『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별표14】『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별표1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정한 내용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제6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2-39. 암입원일당(요양병원)(4일이상9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일당(요양병원)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암입원일당(요양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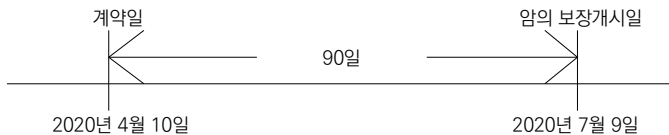
| 구 분                                          | 지급금액                |
|----------------------------------------------|---------------------|
| 암 입원시(4일이상 90일한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입원시<br>(4일이상 90일한도)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 나이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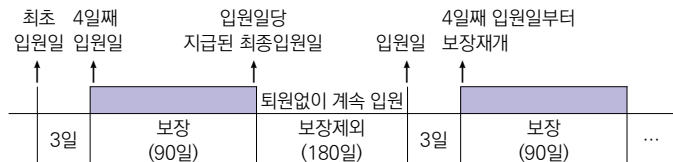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요양병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암입원일당(요양병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입원일당(요양병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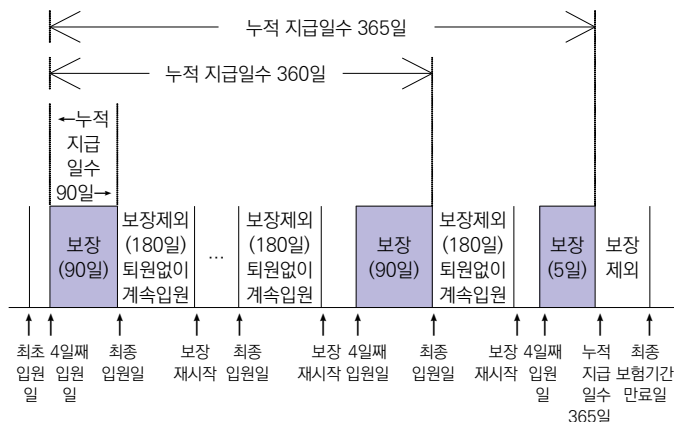
〈예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원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지급된 암입원일당(요양병원)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암입원일당(요양병원)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을 다시 진단 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



※ 예시의 「…」은 보장기간(90일)과 보장제외(180일)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최종입원일」은 암입원일당(요양병원)(4일 이상 90일 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을 의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으로 인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90일 한도로 암입원일당(요양병원)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입원일당(요양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 조산원
  -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 생물(암)”(【별표9】『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별표14】『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별표1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2-40. 뇌혈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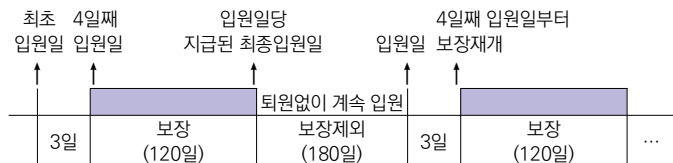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뇌혈관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별표16】『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1. 뇌졸중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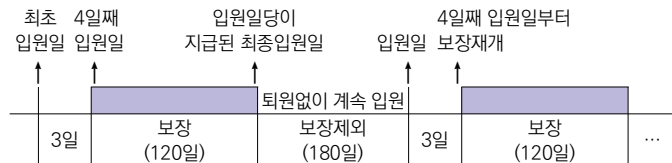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뇌졸중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뇌졸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졸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뇌졸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뇌졸중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졸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뇌졸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뇌졸중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뇌졸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뇌졸중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뇌졸중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별표17】『뇌졸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2.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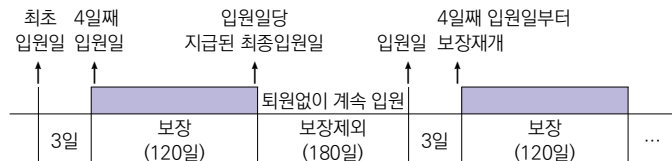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심장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허혈성심장질환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별표19】『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3.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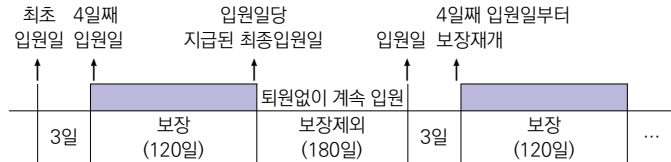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입원이라도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급성심근경색증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별표20】『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4. 식중독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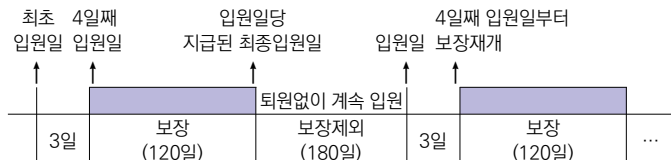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식중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식중독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식중독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식중독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식중독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식중독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식중독에 대한 입원이라도 식중독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식중독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식중독입원일당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 시〉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120일 한도로 식중독입원일당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식중독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관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식중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식중독 분류표”(【별표31】『식중독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식중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식중독”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5.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병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6. 73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7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7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73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7대질병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7대질병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7대질병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 100%      |
| 특정15대질병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특정15대질병 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특정15대질병 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 100%  |
| 다발성15대질병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다발성15대질병 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다발성15대질병 수술비 보장<br>보험 가입금액의100% |
| 35대생활질환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35대생활질환 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35대생활질환 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100%   |
| 치핵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치핵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치핵수술비 보장<br>보험가입금액의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7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73대질병”이라 함은 “7대질병”, “특정15대질병”, “다발성15대질병”, “35대생활질환” 및 “치핵”을 총칭합니다.
- ② 제1항의 “7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7대질병”(【별표32】『7대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특정15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15대질병”(【별표33】『특정15대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의 “다발성15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성15대질병”(【별표34】『다발성15대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35대생활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35대생활질환”(【별표35】『35대생활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치핵”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핵”(【별표36】『치핵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73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병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7. 32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32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32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32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13대질병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19대질병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3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32대질병”이라 함은 “13대질병” 및 “19대질병”을 총칭

합니다.

- ② 제1항의 “13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3대질병” (【별표37】『13대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19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19대질병” (【별표38】『19대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32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조음과,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병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8. 29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9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29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29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특정9대질병<br>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다빈도20대질병<br>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29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9대질병”이라 함은 “특정9대질병” 및 “다빈도20대질병”을 총칭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9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특정9대질병”(【별표39】『특정9대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다빈도20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빈도20대질병”(【별표40】『다빈도20대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29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병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49. 7대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7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7대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7대질병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br>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br>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7대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7대질병”(【별표32】『7대질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7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병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0. 남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남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남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 당 아래의 금액을 남성특정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남성특정질병<br>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남성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남성특정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남성특정질병”(【별표41】『남성특정질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남성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병질환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1. 여성특정질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여성특정질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여성특정질병<br>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3항의 레이저(Laser)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관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여성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특정질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특정질병”(【별표42】『여성특정질병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여성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눈 관련 질환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수술, 선천병질병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2. 암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암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암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 나이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②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별표9】『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신생물”(【별표14】『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별표15】『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항암방사선치료”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9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3.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유방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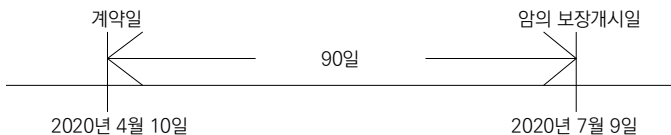
| 구 분              |                | 지급금액                |
|------------------|----------------|---------------------|
| 유방암으로인한<br>유방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유방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별표9】『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별표43】『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단, 미용을 위한 수술, 유방의 조직검사(Biospy), 내시경 하 수술 등은 제외합니다.
- ③ “유방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4.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인한 자궁적출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자궁적출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인한 자궁적출수술비(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 조산원
  -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 “자궁적출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별표44】『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자궁을 적출(외과적으로 제거함)하는 수술로써 “자궁적출수술 분류표”(【별표45】『자궁적출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③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궁적출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5. 뇌혈관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2. 조산원
  -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별표16】『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

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6. 뇌졸중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졸중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중”(【별표17】『뇌졸중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7.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허혈성심장질환”(【별표19】『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8.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심근경색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별표20】『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59. 심장판막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장판막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장판막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심장판막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심장판막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구 분            | 지급금액                |
|--------------------|----------------|---------------------|
| 심장판막수술시<br>(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심장판막수술”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주는 수술
2.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② 단, 다음과 같은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1.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 예) 경피적(피부를 통한)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oplasty)  
2.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판막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60. 관상동맥우회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관상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관상동맥우회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구 분            | 지급금액                |
|----------------------|----------------|---------------------|
| 관상동맥우회수술비<br>(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관상동맥우회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 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상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관상동맥확장술(인공혈관 등)과 다른 모든 내부동맥에 활용된 카테터(Catheter) 및 레이저시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관상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 ③ 제1항의 관상동맥우회술은 혈관촬영법을 통해 현격한 관상동맥의 협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시술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장병전문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61. 관상동맥성형수술비(PTCA)(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관상동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관상동맥성형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관상동맥성형수술시<br>(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관상동맥성형술(PTCA)”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관상동맥성형술(PTCA)”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관상동맥우회술 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확장술을 말합니다.  
예) 경피적관동맥풍선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Balloon Angioplasty),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등
- ② 제1항의 관상동맥확장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급여 관상동맥성형술 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관상동맥성형술 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진료행위 외에 “급여 관상동맥성형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관상동맥성형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62.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동맥류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대동맥류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대동맥류인조혈관<br>치환수술시<br>(최초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으로 치환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 ② 단,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경피적혈관내 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6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64. 충수염(맹장염)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충수염(맹장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충수염(맹장염)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충수염(맹장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충수염(맹장염)”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충수염(맹장염)”(【별표46】『충수염(맹장염) 분류표』 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충수염(맹장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충수염(맹장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총수염(맹장염)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65. 치핵수술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치핵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치핵 수술시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치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치핵”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핵”(【별표36】『치핵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치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치핵”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2-66.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받은 이후에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 지급금액                   |
|-------------------------------------------|-------------------|------------------------|
| 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br>(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50%  |
|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100% |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br>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br>(각각 최초 1회한)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미만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10%  |
|                                           | 보험계약일로부터<br>1년 이상 |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br>20%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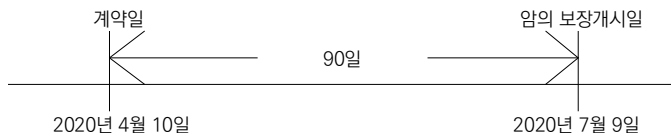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보험계약일이며,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암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암의 보장개시일은 보험나이 15세 이상의 경우만 해당)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 생물(암)”(【별표9】『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참조)으로 분류되는 질병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적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제5조(“항암방사선치료”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단,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4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Ⅲ.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 3-1.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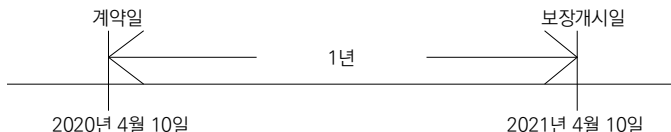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중등도이상치매의 보장개시일[예시]】

(단,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원인이 질병인 경우만 해당)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제4조(“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CDR 2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CDR 2점 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등도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4조(“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등도이상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계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장애”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 결과가 2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계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③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등도이상치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다만,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⑤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항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무효)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20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특

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의 전 일 이전에 중등도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 제8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중등도이상치매진단비를 지급할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2. 중증치매진단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치매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보험기간 중 CDR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기간 중 CDR 3점 이상 상태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중증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치매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4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중증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증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에서 그 상태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③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하며,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그 진단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회사가 피보험자의 “중증치

매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됩니다. 다만,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⑤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항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

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치매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3. 장기요양진단비(1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의 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라 합니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등급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4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⑤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항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

## 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급)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4. 장기요양진단비(1~2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2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의 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라 합니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등급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4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⑤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항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

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2급)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5. 장기요양진단비(1~4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기요양진단비(1~4급)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4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의 판정기준(이하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라 합니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장기요양등급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의 변경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예시】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이 현행 1~4등급에서 신체장애등급과 정신장애등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지정대리청구서비스에 관한 사항)

-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②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항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⑤ 지정대리청구인은 제7항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

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진단비(1~4급)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6. 응급실내원비(응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내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응급실내원비(응급)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제4조(“응급실”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응급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뇌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조·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려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려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7. 응급실내원비(비응급)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내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응급실내원비(비응급)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사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F04~F99), 선천성 뇌질환(Q00~Q04) 및 심신상실
  2.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등으로 인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인한 경우

### 제4조(“응급실”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응급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意識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8. 유방절제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방절제수술(Total Mastectomy)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방절제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2. 피보험자의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제4조(“유방절제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절제수술 분류표”(【별표49】『유방절제수술 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② 단, 부분절제술(Subtotal Mastectomy), 국소절제수술(Lumpectomy), 유방의 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유두의 절제,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의 조직검사(Biopsy)는 제외합니다.

## 제5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유방절제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9. 김스치료비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직접결과로써 김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김스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김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김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

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깁스(Cast)치료”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한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10. 수술비(1~5종)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종수술 분류표”(【별표50】『1~5종수술 분류표』참조)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수술비(1~5종)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수술종류 | 예 시(보험가입금액 300만원 기준) |
|------|----------------------|
| 1종   | 10만원                 |
| 2종   | 30만원                 |
| 3종   | 50만원                 |
| 4종   | 100만원                |
| 5종   | 300만원                |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11. 각막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각막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각막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3-12. 5대장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장기이식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제3조(“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5대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및 폐장을 말합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은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절단】**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비를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

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IV. 제도성 특별약관

### 4-1.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이외에 아래의 가입대상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의 부모
  3. 배우자의 부모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5. 본인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의 피보험자는 최초계약체결시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자를 말합니다.

#### 제2조(피보험자의 변경)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계약자는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4-2.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④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ㄴㄴ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ㄴㄴ 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제3조(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4-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7조(보

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 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4-4.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을 포함합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

협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은 제외합니다)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4-5.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제1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또는 신청)과 우리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범위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경우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있게 입증된 경우 등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질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혹은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이 특약을 부가할 때에는 회사는 부담보 설정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2.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① 보험계약에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제2항의 조건을 부가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별표51】『특정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별표52】『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합니다.)
- ③ 제2항의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2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2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 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⑦ 제2항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제3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4-6.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 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2조(제출서류)

-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사례】

2020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0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기 전(2020년 1월 15일~2020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0년 6월 1일~2020년 12월 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 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

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례】

2020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0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 4-7. 전자서명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 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보험증권은 제외하며, 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4조(보험계약자의 알릴의무)

-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을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이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 무배당 더블플러스 건강보험(2001) 별 표

---

## 【별표1】 장애분류표

### Ⅰ 총칙

####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써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 10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 5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sup>주1)</sup> 안전수지(Finger Counting)<sup>주2)</sup>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져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2. 귀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45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5  |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text{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text{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text{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text{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text{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 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만 평가한다.

#### 라. 평형기능의 장애

- 1)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항목             | 내 용                                                              | 점수 |
|----------------|------------------------------------------------------------------|----|
| 검사<br>조건       | 양측 전정기능 소실                                                       | 14 |
|                | 양측 전정기능 감소                                                       | 10 |
|                | 일측 전정기능 소실                                                       | 4  |
| 치료<br>병력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기능<br>장애<br>조건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text{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 20 |
|                | 두 눈을 뜨고 $10\text{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 12 |
|                | 두 눈을 뜨고 $10\text{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text{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 8  |
|                |                                                                  |    |

-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

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 3. 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80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60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40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

- 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

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 6. 척추(등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40  |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 30  |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 10  |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 20  |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 15  |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애로 평가한다.
-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붙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애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 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애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 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 7. 체간골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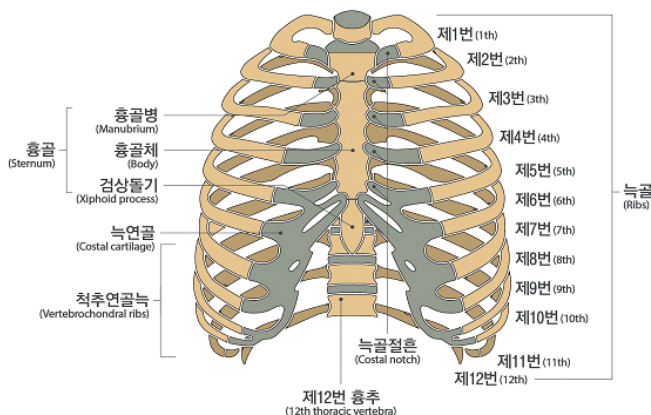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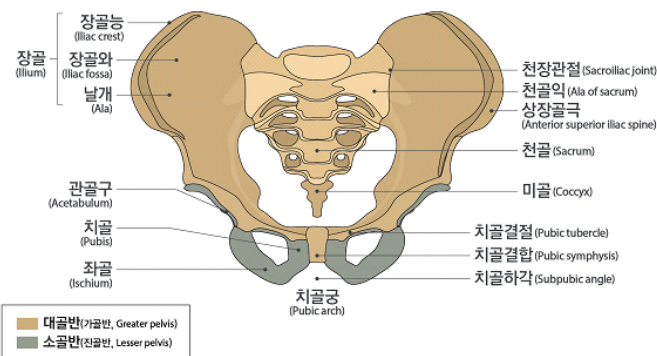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골반뼈】



## 8. 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붙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

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 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9. 다리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5   |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0  |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30  |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15  |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 5   |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

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붙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10. 손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30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 나. 장애판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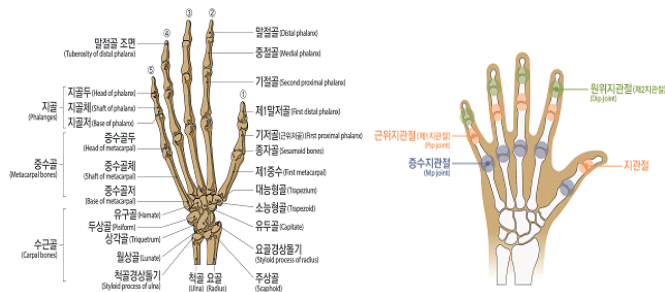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

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붙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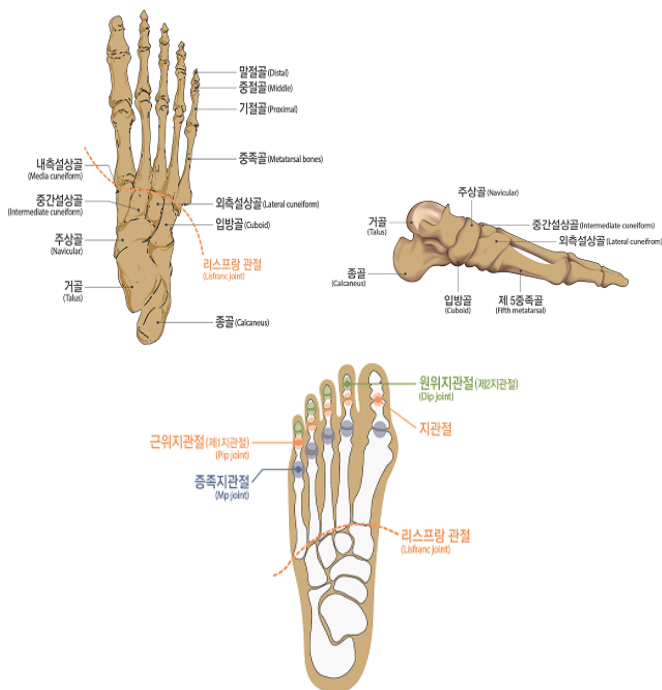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20  |
|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8   |
|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붙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 100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 75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50  |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30  |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15  |

###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1)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 장애의 분류                             | 지급률    |
|------------------------------------|--------|
|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 100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 75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 50     |
|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 25     |
|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 10     |
|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 100    |
|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 80     |
|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 11)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 12)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 13)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1〉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1〉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sup>주)</sup>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 공공시설의 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 치매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1】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 유형      |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
|---------|-------------------------------------------------------------------------------------------------------------------------------------------------------------------------------------------------------------------------------------------------------------------------------------------------------------------------------------------------------------------------------------------------------------------------------------------------------------------------------------|
| 이동동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지급률 40%)</li> <li>-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li> <li>-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li> <li>-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li> </ul>                                 |
| 음식물 섭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li> <li>-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li> <li>-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li> <li>-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li> </ul>                                                                                                                          |
| 배변·배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li> <li>-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지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 (15%)</li> <li>-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li> </ul> |
| 목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li> <li>-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li> <li>-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li> </ul>                                                                                                                                                                                                                        |
| 옷 입고 벗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li> <li>-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li> <li>-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li> </ul>                                                                                                                                                                                               |

## 【붙임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 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3. 28.>
  1.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별표2】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I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상 병                     | 분 류 번 호       |
|-----------------------------|---------------|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 S02(S02.5 제외) |
| 2. 머리의 으깬손상                 | S07           |
|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 4. 목의 골절                    | S12           |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II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 상 상 병                      | 분 류 번 호        |
|------------------------------|----------------|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의 파절 제외)  | S02(S02.5는 제외) |
| 2. 경막외출혈                     | S06.4          |
| 3. 외상성 경막하출혈                 | S06.5          |
| 4.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 S06.6          |
| 5.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 S06.7          |
| 6. 머리의 으깬손상                  | S07            |
| 7.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 8. 목의 골절                     | S12            |
| 9.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 S14            |
| 10.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 11.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 S28            |
| 1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13.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 14.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 S48            |
| 15. 아래팔의 골절                  | S52            |
| 16.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 17. 대퇴골의 골절                  | S72            |
| 18.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 S78            |
| 1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 2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 2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 22.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 23.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 24.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 2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4】 골절 등급분류기준표**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발생시에는 골절부위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 등급 | 머리                                                                                    | 목                                                          | 몸통                                                                                    | 팔                                                                                 | 다리                                                                            | 기타                     |
|----|---------------------------------------------------------------------------------------|------------------------------------------------------------|---------------------------------------------------------------------------------------|-----------------------------------------------------------------------------------|-------------------------------------------------------------------------------|------------------------|
| 1  | S020,<br>S027,<br>S029,<br>S064-S067                                                  | S122,<br>S127,<br>S129,<br>S141                            | S281                                                                                  |                                                                                   |                                                                               | T026,<br>T028          |
| 2  | S028,<br>T020                                                                         | S120,<br>S121,<br>S128,<br>S140,<br>S142,<br>S143,<br>S146 | S220,<br>S224,<br>S225,<br>S323,<br>S324,<br>S325,<br>S328                            | S423,<br>S424,<br>S427,<br>S429,<br>S480,<br>T022                                 | S720-S723,<br>S727-S729,<br>S780,<br>S781,<br>S789,<br>S822,<br>T023,<br>T025 | T027,<br>T029,<br>T142 |
| 3  | S021,<br>S022,<br>S023,<br>S024,<br>S026,<br>S070,<br>S071,<br>S078,<br>S079,<br>S099 |                                                            | S221,<br>S222,<br>S228,<br>S229,<br>S320,<br>S321,<br>S327,<br>T021,<br>T080,<br>T081 | S422,<br>S428,<br>S489,<br>S520,<br>S522,<br>S526-S529,<br>S624,<br>T100,<br>T101 | S724,<br>S821,<br>S823,<br>S827-S829,<br>T120,<br>T121                        |                        |
| 4  |                                                                                       | S145                                                       | S223,<br>S280,<br>S322                                                                | S420,<br>S421,<br>S481,<br>S521,<br>S523,<br>S524,<br>S525,<br>S620-S623,<br>S628 | S820,<br>S824-S826,<br>S920-S924,<br>S927,<br>S929                            |                        |
| 5  |                                                                                       | S144                                                       |                                                                                       | S625,<br>S626,<br>S627,<br>T024                                                   | S925                                                                          |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5】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상 병              | 분 류 번 호 |
|----------------------|---------|
|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 2. 머리의 으깬손상          | S07     |
|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 S09.9   |
| 4. 목의 골절             | S12     |
|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 8. 아래팔의 골절           | S52     |
|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 10. 대퇴골의 골절          | S72     |
|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 T02     |
|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0     |
|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12     |
|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 T14.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6】 5대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상 병              | 분 류 번 호     |
|----------------------|-------------|
| 1. 머리의 으깬손상          | S07         |
| 2. 목의 골절             | S12         |
|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S22.0~S22.1 |
|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5. 대퇴골의 골절           | S7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7】 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
|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0  |
|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1  |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2  |
|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3  |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4  |
|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5  |
|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6  |
|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7  |
|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8  |
|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29  |
|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0  |
|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T31  |
|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      | T32  |
| 14.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 L5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8】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대한 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 분류 항목 |                       | 분류번호 |
|-------|-----------------------|------|
| 뇌손상   | 두개내 손상                | S06  |
| 내장손상  | 심장의 손상                | S26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 S27  |
|       | 복부내 기관의 손상            | S36  |
|       |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 S37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9】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C26 |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0~C39 |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C44 |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 7.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C68 |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 C69~C72 |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C75 |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C80 |
|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 D46     |
|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 20. 골수섬유증                      | D47.4   |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별표10】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4  |
| 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C73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1】 11대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1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21. 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식도의 악성신생물                       | C15   |
| 2. 위의 악성신생물                        | C16   |
| 3. 췌장의 악성신생물                       | C25   |
|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       |
| - 수막의 악성신생물                        | C70   |
| - 뇌의 악성신생물                         | C71   |
|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C72   |
|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
| - 호지킨림프종                           | C81   |
| - 소포성 림프종                          | C82   |
| - 비소포성 림프종                         | C83   |
| - 성숙 T/NK-세포림프종                    | C84   |
| - 기타 상세포형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C85   |
|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C86   |
|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 C88   |
|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C90   |
| - 림프성 백혈병                          | C91   |
| - 골수성 백혈병                          | C92   |
| -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 상세포형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포형의 악성신생물 | C96   |
| -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 C22   |
| 7. 담낭의 악성신생물                       | C23   |
| 8. 담도의 기타 및 상세포형 부분의 악성신생물         | C24   |
| 9.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3   |
|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C34   |
| 11. 소장외의 악성신생물                     | C17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2】유방암 및 생식기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암 및 생식기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 2.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 3.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3】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식도의 악성신생물                       | C15     |
| 2. 췌장의 악성신생물                       | C25     |
|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     |
|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1     |
|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 C70~C72 |
| - 수막의 악성신생물                        | C70     |
| - 뇌의 악성신생물                         | C71     |
| -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C72     |
|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 - 호지킨림프종                           | C81     |
| - 소포성 림프종                          | C82     |
| - 비소포성 림프종                         | C83     |
| - 성숙 T/NK-세포림프종                    | C84     |
| -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 C85     |
|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 C86     |
| - 악성 면역중식성 질환                      | C88     |
|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 C90     |
| - 림프성 백혈병                          | C91     |
| - 골수성 백혈병                          | C92     |
| - 단핵구성 백혈병                         | C93     |
|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 C94     |
|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 C95     |
|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 C96     |
| -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 4. 제자리흑색종                 | D03  |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 D47.0 |
|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 D47.2 |
|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7.7 |
|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 D47.9 |
|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6】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지주막하 출혈                     | I60  |
| 2. 뇌내출혈                        | I61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4. 뇌경색증                        | I63  |
|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8.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7】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지주막하출혈                      | I60  |
| 2. 뇌내출혈                        | I61  |
|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 4. 뇌경색증                        | I63  |
|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8】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지주막하 출혈         | I60  |
| 뇌내출혈            | I61  |
| 기타 비와상성 두 개내 출혈 | I6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19】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협심증                 | I20  |
| 2. 급성심근경색증             | I21  |
| 3. 후속심근경색증             | I22  |
|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I24  |
| 6. 만성 허혈심장병            | I25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20】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급성심근경색증             | I21  |
| 2. 후속 심근경색증            | I22  |
|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I23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21】말기폐질환(End Stage Lung Disease)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말기 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인플루엔자 및 폐렴<br>- 수두폐렴(J17.1*)<br>-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br>-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br>- 폐 독소포자충증(J17.3*) | J09~J18<br>B01.2+<br>B05.2+<br>B25.0+<br>B58.3+ |
| 2.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 J20~J22                                         |
| 3.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 J40~J47                                         |
|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 J60~J70                                         |
|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 J80~J84                                         |
| 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 J85~J86                                         |
| 7. 흉막의 기타 질환                                                                                          | J90~J94                                         |
| 8.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 J95~J9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22】 요로결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요로결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신장 및 요관의 결석<br>하부요로의 결석 | N20<br>N21.8, N21.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3】 대상포진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대상포진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대상포진    | B02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24】대상포진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대상포진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대상포진눈병  | B02.3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5】통풍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풍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통풍      | M10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26】 남성16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남성16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결핵    | 결핵<br>- 결핵성복막염(A18.30+)<br>-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br>- 결핵 관절염(A18.01+)<br>- 척추의 결핵(A18.00+)<br>- 뼈의 결핵(A18.02+)<br>- 결핵성 방광염(A18.11+)<br>-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5+)<br>-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6+)<br>결핵의 후유증 | A15-A19<br>K67.3*<br>K93.0*<br>M01.1*<br>M49.0*<br>M90.0*<br>N33.0*<br>N74.0*<br>N74.1*<br>B90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br>-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E00-E07<br>H06.2*                                                                              |
|       | 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br>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br>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당뇨병   | 1형 당뇨병<br>2형 당뇨병<br>영양실조 관련 당뇨병<br>기타명시된 당뇨병<br>상세불명의 당뇨병<br>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br>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br>당뇨병성 백내장<br>당뇨병성 망막병증<br>당뇨병성 관절병증<br>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E10<br>E11<br>E12<br>E13<br>E14<br>G59.0<br>G63.2<br>H28.0<br>H36.0<br>M14.2<br>N08.3          |
| 녹내장   | 녹내장<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0<br>H42                                                                                     |
| 백 내 장 | 노년 백내장<br>기타 백내장<br>수정체의 기타장애                                                                                                                                                                                    | H25<br>H26<br>H27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br>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br>허혈심장질환<br>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br>기타 형태의 심장병<br>- 수막구균성 심장병 등(I32.0*, I39.8*, I41.0*, I52.0*)<br>- 칸디다심내막염(I39.8*)                                                                       | I00 ~ I02<br>I05 ~ I09<br>I20 ~ I25<br>I26 ~ I28<br>I30 ~ I52<br>A39.5+<br>B37.6+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 ~ I69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 고혈압성 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br>고혈압성 심장병<br>고혈압성 신장병<br>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br>이차성 고혈압<br>고혈압성 뇌병증<br>고혈압성 망막병증                                                                                                                                                                  | I10<br>I11<br>I12<br>I13<br>I15<br>I67.4<br>H35.02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br>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br>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br>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br>-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br>-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br>- 수두폐렴(J17.1*)<br>- 폐독소포자충증(J17.3*)<br>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br>재향군인병<br>폐렴이 합병된 홍역 | J12<br>J13<br>J14<br>J15<br>J16<br>J17<br>B25.0+<br>B05.2+<br>B01.2+<br>B58.3+<br>J18<br>A48.1<br>B05.2 |
| 만성<br>하부호흡기<br>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br>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br>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br>천식<br>천식지속상태                                                                                                                                                                               | J40<br>J41<br>J42<br>J45<br>J46                                                                         |
| 위궤양<br>및<br>십이지장<br>궤양 | 위궤양<br>십이지장궤양<br>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5<br>K26<br>K27                                                                                       |
| 간질환                    | 바이러스 간염<br>간의 질환<br>-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br>- 톡소포자충 간염(K77.0*)                                                                                                                                                                                             | B15 ~ B19<br>K70 ~ K77<br>B25.1+<br>B58.1+                                                              |
| 관절염                    | 감염성 관절병증<br>(결핵관절염 제외)<br>염증성 다발관절병증<br>(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br>- 류마티스 폐질환(M05.1+)<br>관절증<br>기타 관절 장애                                                                                                                                                            | M00 ~ M03<br>(M01.1*제외)<br>M05 ~ M14<br>(M14.2*제외)<br>J99.0*<br>M15 ~ M19<br>M20 ~ M25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 방광의결석 | 방광의 결석  | N21.0   |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27】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사구체질환          | 급성 신염증후군                                         | N00                  |
|                |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 N01                  |
|                |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 N02                  |
|                | 만성 신염증후군                                         | N03                  |
|                | 신증후군                                             | N04                  |
|                |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 N05                  |
|                |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 N06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 N07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br>(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 N08                  |
|                | - 사구체질환 동반(N08.5*)                               | (N08.3제외)<br>M32.13+ |
| 신세뇨관-간질질환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0                  |
|                |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 N11                  |
|                |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 N12                  |
|                |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 N13                  |
|                |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 N14                  |
|                |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 N15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br>-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N16.4*) | N16<br>M32.13+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 N25                  |
|                |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 N26                  |
|                |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 N27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N28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N29                  |
|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 방광염                                              | N3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N31                  |
|                | 방광의 기타 장애                                        | N32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 N33                  |
|                |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 N37                  |
|                | -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                          | B37.40+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br>(스트레스요실금 제외)                | N39<br>(N39.3제외)     |
|                |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 (N39.4제외)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생식기질환 | 음낭수종 및 정액류                | N43     |
|       | 고환의 염전                    | N44     |
|       | 고환염 및 부고환염                | N45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 | N49     |
|       |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             | N50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장애   | N51     |
|       | - 전립선의 결핵(N51.0*)]        | A18.13+ |
|       | - 기타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N51.0*)  | A18.14+ |
|       | - 편모충성 전립선염(N51.0*)       | A59.01+ |
|       | - 불거리고환염(N51.1*)          | B26.0+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28】여성16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16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 분류번호    |
|----------|------------------|---------|
| 당뇨병      | 1형 당뇨병           | E10     |
|          | 2형 당뇨병           | E11     |
|          |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 E12     |
|          | 기타명시된 당뇨병        | E13     |
|          |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     |
|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 G59.0   |
|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G63.2   |
|          | 당뇨병성 백내장         | H28.0   |
|          | 당뇨병성 망막병증        | H36.0   |
|          | 당뇨병성 관절병증        | M14.2   |
|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N08.3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 I00~I02 |
|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I05~I09 |
|          | 허혈심장질환           | I20~I25 |
|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I28 |
|          | 기타형태의 심장병        | I30~I52 |
|          | 수막구균성 심장막염       | A39.5   |
|          | 수막구균성 심내막염       | A39.5   |
|          | 수막구균성 심근염        | A39.5   |
|          | 수막구균성 심장염 NOS    | A39.5   |
|          | 칸디다심내막염          | B37.6   |
|          |                  |         |
| 고혈압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0     |
|          | 고혈압성 심장병         | I11     |
|          | 고혈압성 신장병         | I12     |
|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I13     |
|          | 이차성 고혈압          | I15     |
|          | 고혈압성 뇌병증         | I67.4   |
|          | 고혈압성 망막병증        | H35.02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I69 |
| 간질환      | 바이러스 간염          | B15~B19 |
|          | 간의 질환            | K70~K77 |
|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 B25.1   |
|          | 톡소포자충 간염         | B58.1   |
| 위·십이지장계양 | 위궤양              | K25     |
|          | 십이지장궤양           | K26     |
|          |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 K27     |

| 대 상 질 병           |                                                | 분류번호             |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br>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                         | E00~E07<br>H06.2 |
|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br>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 만성<br>하부호흡기<br>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J40              |
|                   |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 J41              |
|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 J42              |
|                   | 천식                                             | J45              |
|                   | 천식지속상태                                         | J46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 J12              |
|                   |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 J13              |
|                   |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 J14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 J15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 J16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 J17              |
|                   |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                                    | B25.0            |
|                   | 홍역에서의 폐렴                                       | B05.2            |
|                   | 수두폐렴                                           | B01.2            |
|                   | 폐 독소포자충증                                       | B58.3            |
|                   |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 J18              |
|                   | 재향군인병                                          | A48.1            |
|                   | 폐렴이 합병된 홍역                                     | B05.2            |
| 백내장               | 노년백내장                                          | H25              |
|                   | 기타 백내장                                         | H26              |
|                   | 수정체의 기타장애                                      | H27              |
| 녹내장               | 녹내장                                            | H40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2              |
| 결핵                | 결핵                                             | A15~A19          |
|                   | 결핵의 후유증                                        | B90              |
|                   | 결핵 관절염                                         | M01.1            |
|                   | 척추의 결핵                                         | M49.0            |
|                   | 뼈의 결핵                                          | M90.0            |
|                   | 결핵성 방광염                                        | N33.0            |
|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N74.0            |
|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N74.1            |
|                   | 결핵성 복막염                                        | K67.3            |
|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 K93.0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 대 상 질 병 |                   | 분류번호             |
|---------|-------------------|------------------|
| 골다공증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 M80              |
|         |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 M81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M82              |
|         | 골 연속성의 장애         | M84              |
| 관절염     | 관절병증<br>류마티스 폐질환  | M00~M25<br>J99.0 |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29】 부인과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부인과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단, 아래의 상병 이외의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코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제자리신생물                                                               | D00~D09                                  |
| 2. 양성신생물                                                                | D10~D36                                  |
| 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D44, D47.0, D47.2, D47.7, D47.9, D48 |
| 4. 유방의 장애                                                               | N60~N64                                  |
| 5.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 N70~N77                                  |
| 6. 여성 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br>(습관적 유산자 제외)<br>(여성 불임 제외)<br>(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 N80~N95                                  |
| 7. 자궁경부의 결핵                                                             | A18.15                                   |
| 8.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 A18.16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0】 여성5대생활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5대생활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성대결절(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 J38   |
| 2. 손목터널증후군                      | G56.0 |
| 3. 하지정맥류                        | I83   |
| 4. 족저근막염                        | M72.2 |
| 5. 내향성 손발톱                      | L60.0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1】식중독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식중독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기타 살모넬라 감염               | A02  |
| 2. 시겔라증                     | A03  |
| 3. 기타 세균성 장 감염              | A04  |
| 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 A05  |
| 5. 아메바증                     | A06  |
| 6. 기타 원충성 장 질환              | A07  |
| 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      | A08  |
| 8.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1  |
| 9.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 T62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2】 7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7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br>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br>허혈심장질환<br>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br>기타 형태의 심장병<br>- 수막구균성 심장병 등(I32.0*, I39.8*, I41.0*, I52.0*)<br>- 칸디다심내막염(I39.8*)     | I00 ~ I02<br>I05 ~ I09<br>I20 ~ I25<br>I26 ~ I28<br>I30 ~ I52<br>A39.5+<br>B37.6+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 ~ I69                                                                             |
| 간질환                 | 바이러스 간염<br>간의 질환<br>-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br>- 톡소포자충 간염(K77.0*)                                                                                 | B15 ~ B19<br>K70 ~ K77<br>B25.1+<br>B58.1+                                            |
| 고혈압성 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br>고혈압성 심장병<br>고혈압성 신장병<br>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br>이차성 고혈압<br>고혈압성 뇌병증<br>고혈압성 망막병증                                                      | I10<br>I11<br>I12<br>I13<br>I15<br>I67.4<br>H35.02                                    |
| 당뇨병                 | 1형 당뇨병<br>2형 당뇨병<br>영양실조 관련 당뇨병<br>기타 명시된 당뇨병<br>상세불명의 당뇨병<br>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br>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br>당뇨병성 백내장<br>당뇨병성 망막병증<br>당뇨병성 관절병증<br>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E10<br>E11<br>E12<br>E13<br>E14<br>G59.0<br>G63.2<br>H28.0<br>H36.0<br>M14.2<br>N08.3 |
| 만성<br>하부 호흡기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br>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br>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br>천식<br>천식지속상태                                                                   | J40<br>J41<br>J42<br>J45<br>J46                                                       |
| 위궤양 및<br>십이지장<br>궤양 | 위궤양<br>십이지장궤양<br>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5<br>K26<br>K27                                                                     |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3】특정15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15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결핵                   | 결핵<br>- 결핵성복막염(A18.30+)<br>-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br>- 결핵 관절염(A18.01+)<br>- 척추의 결핵(A18.00+)<br>- 뼈의 결핵(A18.02+)<br>- 결핵성 방광염(A18.11+)<br>-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5+)<br>-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6+)<br>결핵의 후유증                                                                                                                                                                                                                                                                                                        | A15~A19<br>K67.3*<br>K93.0*<br>M01.1*<br>M49.0*<br>M90.0*<br>N33.0*<br>N74.0*<br>N74.1*<br>B90                                                                                                         |
| 패혈증                  | 연쇄구균패혈증<br>기타 패혈증                                                                                                                                                                                                                                                                                                                                                                                                                                                                                                       | A40<br>A41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br>-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E00~E07<br>H06.2*                                                                                                                                                                                      |
|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br>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br>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중추<br>신경계통의<br>염증성질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br>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br>- 수막구균수막염(G01*)<br>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br>-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br>-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br>-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br>-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br>- 볼거리수막염(G02.0*)<br>- 수두수막염(G02.0*)<br>- 대상포진수막염(G02.0*)<br>- 칸디다수막염(G02.1*)<br>-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br>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br>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br>-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br>-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br>-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br>-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br>- 볼거리뇌염(G05.1*)<br>- 수두뇌염(G05.1*) | G00<br>G01<br>A39.0+<br>G02<br>A87.1+<br>A87.0+<br>B00.3+<br>B05.1+<br>B26.1+<br>B01.0+<br>B02.1+<br>B37.5+<br>B38.4+<br>G03<br>G04<br>G05<br>A85.1+<br>A85.0+<br>B00.4+<br>B05.0+<br>B26.2+<br>B01.1+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포진뇌염(G05.1*)</li> <li>-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G05.1*, G02.0*, G05.1*)</li> <li>-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G01*, G05.0*)</li> </ul>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메바성 뇌농양(G07*)</li> </ul>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br>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 B02.0+<br>B06.0+<br><br>A32.1+<br>G06<br>G07<br>A06.6+<br>G08<br>G09                                    |
| 파킨슨병              | 파킨슨병<br>이차성 파킨슨증                                                                                                                                                                                                                                                                                                                          | G20<br>G21                                                                                              |
| 다발경화증             | 다발경화증                                                                                                                                                                                                                                                                                                                                     | G35                                                                                                     |
| 자율<br>신경계통의<br>장애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G90                                                                                                     |
| 녹내장               | 녹내장<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0<br>H42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 대동맥류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I71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br>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br>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br>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li> <li>-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li> <li>- 수두폐렴(J17.1*)</li> <li>- 폐톡소포자충증(J17.3*)</li> </ul>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br>재향군인병<br>폐렴이 합병된 홍역               | J12<br>J13<br>J14<br>J15<br>J16<br>J17<br>B25.0+<br>B05.2+<br>B01.2+<br>B58.3+<br>J18<br>A48.1<br>B05.2 |
| 폐질환               | 폐기종<br>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br>기관지확장증<br>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br>흉막의 기타 질환                                                                                                                                                                                                                                                                          | J43<br>J44<br>J47<br>J85~J86<br>J90~J94                                                                 |
| 급성 췌장염            | 급성 췌장염                                                                                                                                                                                                                                                                                                                                    | K85                                                                                                     |
| 췌장질환              | 췌장의 기타 질환<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 K86<br>K87                                                                                              |

| 구분  | 대상 질병                                                                                             | 분류번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세포바이러스헤장염(K87.1*)</li> <li>- 볼거리헤장염(K87.1*)</li> </ul> | B25.2+<br>B26.3+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4】 다발성15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다발성15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 분                 |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 D13                      |
|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br>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                       | D14<br>D15               |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 D16                      |
| 조직의 양성신생물           |              |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br>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br>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D19<br>D20<br>D21        |
| 유방의 양성종양            |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D24                      |
| 생식기 양성종양            | 여성 생식기의 양성종양 | 자궁의 평활근종<br>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br>난소의 양성 신생물<br>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D25<br>D26<br>D27<br>D28 |
|                     | 남성 생식기의 양성종양 |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D29                      |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D30                      |
| 수막의 양성신생물           |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D32                      |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              |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D33                      |
|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br>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 D34<br>D35               |
| 백 내 장               |              | 노년 백내장<br>기타 백내장<br>수정체의 기타장애                                        | H25<br>H26<br>H27        |
| 하지의 정맥류             |              | 하지의 정맥류                                                              | I83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총수의 질환 | 총수의 질환                                                                                                                                                                                                                                            | K35~K38                                                                                                   |
| 관절염    | 감염성 관절병증<br>(결핵관절염 제외)<br>염증성 다발관절병증<br>(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br>- 류마티스 폐질환(M05.1+)<br>관절증<br>기타 관절 장애                                                                                                                                                   | M00~M03<br>(M01.1* 제외)<br>M05~M14<br>(M14.2* 제외)<br>J99.0*<br>M15~M19<br>M20~M25                          |
| 생식기질환  | 남성생식기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br>- 편모충성 전립선염(N51.0*)<br>- 볼거리고환염(N51.1*)<br>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br>(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5+) 제외)<br>(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6+) 제외)<br>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br>(습관적 유산자 제외)<br>(여성불임 제외)<br>(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br>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노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 N40~N45,<br>N47~N51<br>A59.01+<br>B26.0+<br>N70~N77<br>(N74.0* 제외)<br>(N74.1* 제외)<br>N80 ~ N95<br><br>N99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5】 35대생활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35대생활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담석증               | 담석증                                                                                                                                                     | K80                                                                                  |
| 사타구니 탈장           | 사타구니 탈장                                                                                                                                                 | K40                                                                                  |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J35                                                                                  |
| 만성 부비동염           | 만성 부비동염                                                                                                                                                 | J32                                                                                  |
| 급성상기도감염           | 급성상기도감염                                                                                                                                                 | J00-J06                                                                              |
| 후각특정질환            |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br>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br>코폴립<br>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 J30<br>J31<br>J33<br>J34                                                             |
|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 편도주위 농양<br>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및 후두의 질환<br>상기도의 기타 질환                                                                                        | J36<br>J37<br>J38<br>J39                                                             |
| 근육장애              | 근염<br>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br>근육의 기타 장애<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                                                                                                    | M60<br>M61<br>M62<br>M63                                                             |
|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 M72.2                                                                                |
| 중이 및 유도의 질환       | 중이 및 유도의 질환<br>-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br>- 홍역후 중이염(H67.1*)                                                                                               | H65-H75<br>B05.3+<br>B05.3+                                                          |
| 내이의 질환            | 내이의 질환                                                                                                                                                  | H80-H83                                                                              |
| 황반변성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H35.3                                                                                |
|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br>- 홍채섬모체염(H22.0*)<br>- 홍채염(H22.0*)<br>- 전방포도막염(H22.0*)<br>- 각막염(H19.1*)<br>- 각막결막염(H19.1*)<br>- 각막상피염(H19.1*)<br>- 간질각막염(H19.1*) | H15-H22<br>B00.50+<br>B00.50+<br>B00.50+<br>B00.51+<br>B00.51+<br>B00.51+<br>B00.51+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막내피염(H19.1*)</li> <li>-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li> <li>- 유행성 각막결막염(H19.2*)</li> <li>- 조선소농병(H19.2*)</li> </ul>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br>(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br>(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br>(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br>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B00.51+<br>B30.0+<br>B30.0+<br>B30.0+<br>H30~H36<br>(H35.3제외)<br>(H35.02제외)<br>(H36.0제외)<br>H46~H48 |
| 사구체질환          | 급성 신염증후군<br>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br>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br>만성 신염증후군<br>신증후군<br>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br>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동반한 고립된 단백뇨<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br>(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br>- 사구체질환 동반(N08.5*)                                                        | N00<br>N01<br>N02<br>N03<br>N04<br>N05<br>N06<br>N07<br>N08<br>(N08.3제외)<br>M32.13+                 |
| 신세뇨관-간질 질환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br>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br>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br>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br>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br>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br>-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N16.4*)                                                                    | N10<br>N11<br>N12<br>N13<br>N14<br>N15<br>N16<br>M32.13+                                            |
| 방광의결석          | 방광의 결석                                                                                                                                                                                                                                               | N21.0                                                                                               |
|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br>상세불명의 신장위축<br>원인불명의 작은 신장<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N25<br>N26<br>N27<br>N28<br>N29                                                                     |
| 비뇨계통의기타 질환     | 방광염<br>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br>방광의 기타 장애<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br>비뇨계통의 기타 장애<br>-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br>(결핵성 방광염(A18.11+)제외)<br>(스트레스요실금 제외)                                                                              | N30<br>N31<br>N32<br>N33<br>N37<br>B37.40+<br>N39<br>(N33.0제외)<br>(N39.3제외)                         |

| 구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 (N39.4제외)                              |
| 유방의 장애              | 양성 유방형성이상<br>유방의 염증성 장애<br>유방의 비대<br>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br>유방의 기타 장애     | N60<br>N61<br>N62<br>N63<br>N64        |
| 특정 부위의<br>탈장        | 대퇴탈장<br>배꼽탈장<br>복벽탈장<br>횡격막탈장<br>기타 복벽탈장<br>상세불명의 복벽탈장             | K41<br>K42<br>K43<br>K44<br>K45<br>K46 |
| 비감염성 장염<br>및<br>결장염 | 크론병[국소성 장염]<br>궤양성 대장염<br>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 K50<br>K51<br>K52                      |
| 특정 장질환              | 장의 혈관장애<br>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br>장의 게실병                         | K55<br>K56<br>K57                      |
| 복막의 질환              | 복막의 질환<br>(결핵성 복막염 제외)<br>- 기타 클라미디아질환(K67.0*)                     | K65~K67<br>(K67.3제외)<br>A74.8+         |
| 담낭담도 질환             | 담낭염<br>담낭의 기타질환<br>담도의 기타질환                                        | K81<br>K82<br>K83                      |
| 척추변형                |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br>척추측만증<br>척추골연골증<br>기타 변형성 등병증                     | M40<br>M41<br>M42<br>M43               |
| 척추병증                | 강직척추염<br>기타 염증성 척추병증<br>척추증<br>기타 척추병증                             | M45<br>M46<br>M47<br>M48               |
| 추간판장애<br>(디스크질환)    | 경추간판장애<br>기타 추간판장애<br>-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1.1+)             | M50<br>M51<br>G55.1*                   |
| 골다공증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br>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br>골연속성의 장애 | M80<br>M81<br>M82<br>M84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안면신경장애        | 삼차신경의 장애<br>안면신경장애<br>기타 뇌신경의 장애                                                                     | G50<br>G51<br>G52                                                            |
| 단일신경병증        | 팔의 단일신경병증<br>다리의 단일신경병증<br>기타 단일신경병증<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br>(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                      | G56<br>G57<br>G58<br>G59<br>(G59.0제외)                                        |
| 특정<br>누적외상성질환 |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br>-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br>경추상완증후군<br>기타 연조직장애<br><br>(발바닥근막성 섬유증증)<br>(어깨병변) | M35<br>H19.3*<br>M53.1<br>M70~M79<br>(M74,M78제외)<br><br>(M72.2제외)<br>(M75제외) |
| 윤활막 및<br>힘줄장애 |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br>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br>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 M65<br>M66<br>M67<br>M68                                                     |
| 식도질환          | 식도염<br>위-식도역류병<br>식도의 기타질환<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 K20<br>K21<br>K22<br>K23                                                     |
| 위,십이지장<br>질환  | 위염 및 십이지장염<br>기능성 소화불량                                                                               | K29<br>K30                                                                   |
| 어깨병변          | 어깨병변                                                                                                 | M75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6】치핵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치핵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치핵  |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br>포함 -치질<br>제외 -출산 및 산후기 합병(O87.2), 임신 합병(O22.4) | K64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7】 13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3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당뇨병질환        | 1형 당뇨병<br>2형 당뇨병<br>영양실조 관련 당뇨병<br>기타명시된 당뇨병<br>상세불명의 당뇨병<br>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br>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br>당뇨병성 백내장<br>당뇨병성 망막병증<br>당뇨병성 관절병증<br>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E10<br>E11<br>E12<br>E13<br>E14<br>G59.0<br>G63.2<br>H28.0<br>H36.0<br>M14.2<br>N08.3 |
| 녹내장          | 녹내장<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 H40<br>H42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br>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br>허혈심장질환<br>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br>기타 형태의 심장병<br>- 수막구균성 심장병 등 (I32.0*, I39.8*, I41.0*, I52.0*)<br>- 칸디다심내막염(I39.8*)   | I00 ~ I02<br>I05 ~ I09<br>I20 ~ I25<br>I26 ~ I28<br>I30 ~ I52<br>A39.5+<br>B37.6+     |
| 고혈압성 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br>고혈압성 심장병<br>고혈압성 신장병<br>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br>이차성 고혈압<br>고혈압성 뇌병증<br>고혈압성 망막병증                                                     | I10<br>I11<br>I12<br>I13<br>I15<br>I67.4<br>H35.02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 ~ I69                                                                             |
| 간질환          | 바이러스 감염<br>간의 질환<br>- 거대세포바이러스감염(K77.0*)<br>- 톡소포자충 감염(K77.0*)                                                                                | B15 ~ B19<br>K70 ~ K77<br>B25.1+<br>B58.1+                                            |
|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위궤양<br>십이지장궤양<br>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5<br>K26<br>K27                                                                     |
| 갑상선질환        | 갑상선의 장애<br>-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 E00~E07<br>H06.2*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br>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br>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 E89.0                                                                                                   |
| 동맥경화증         | 죽상경화증                                                                                                                                                                                                                                                      | I70                                                                                                     |
| 만성<br>하부호흡기질환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br>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br>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br>천식<br>천식지속상태                                                                                                                                                                               | J40<br>J41<br>J42<br>J45<br>J46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 폐렴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br>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br>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br>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br>-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br>-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br>- 수두폐렴(J17.1*)<br>- 폐톡소포자충증(J17.3*)<br>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br>재향균인병<br>폐렴이 합병된 홍역 | J12<br>J13<br>J14<br>J15<br>J16<br>J17<br>B25.0+<br>B05.2+<br>B01.2+<br>B58.3+<br>J18<br>A48.1<br>B05.2 |
| 결핵            | 결핵<br>- 결핵성복막염(A18.30+)<br>-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br>- 결핵 관절염(A18.01+)<br>- 척추의 결핵(A18.00+)<br>- 뼈의 결핵(A18.02+)<br>- 결핵성 방광염(A18.11+)<br>-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5+)<br>-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6+)<br>결핵의 후유증                                           | A15~A19<br>K67.3*<br>K93.0*<br>M01.1*<br>M49.0*<br>M90.0*<br>N33.0*<br>N74.0*<br>N74.1*<br>B90          |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8】 19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9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백 내 장               | 노년 백내장<br>기타 백내장<br>수정체의 기타장애                                    | H25<br>H26<br>H27 |
| 황반변성                |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 H35.3             |
| 담석증                 | 담석증                                                              | K80               |
| 사타구니 탈장             | 사타구니 탈장                                                          | K40               |
| 편도염                 |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 J35               |
| 축농증                 | 만성 부비동염                                                          | J32               |
| 급성상기도감염             | 급성상기도감염                                                          | J00~J06           |
| 담낭담도 질환             | 담낭염<br>담낭의 기타질환<br>담도의 기타질환                                      | K81<br>K82<br>K83 |
| 중이의 진주종             | 중이의 진주종                                                          | H71               |
| 귀경화증                | 귀경화증                                                             | H80               |
|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 D13               |
|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br>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                   | D14<br>D15        |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 D16               |
| 조직의 양성신생물           |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br>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br>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D19<br>D20<br>D21 |
| 수막의 양성신생물           | 수막의 양성 신생물                                                       | D32               |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 D33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갑상선 및<br>내분비선의<br>양성신생물 |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br>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 D34<br>D35                                                                               |
| 관절염                     | 감염성 관절병증<br>(결핵관절염 제외)<br>염증성 다발관절병증<br>(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br>- 류마티스 폐질환(M05.1+)<br>관절증<br>기타 관절 장애 | M00 ~ M03<br>(M01.1* 제외)<br>M05 ~ M14<br>(M14.2* 제외)<br>J99.0*<br>M15 ~ M19<br>M20 ~ M25 |
| 골다공증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br>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br>골연속성의 장애                              | M80<br>M81<br>M82<br>M84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39】 특정9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9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패혈증                  | 연쇄구균패혈증                                     | A40     |
|                      | 기타 패혈증                                      | A41     |
| 중추신경<br>계통의<br>염증성질환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 G00     |
|                      |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 G01     |
|                      | - 수막구균수막염(G01*)                             | A39.0+  |
|                      | - 결핵성 수막염(G01*)                             | A17.0+  |
|                      |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 G02     |
|                      |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 A87.1+  |
|                      |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 A87.0+  |
|                      |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 B00.3+  |
|                      |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 B05.1+  |
|                      | - 볼거리수막염(G02.0*)                            | B26.1+  |
|                      | - 수두수막염(G02.0*)                             | B01.0+  |
|                      | - 대상포진수막염(G02.0*)                           | B02.1+  |
|                      | - 칸디다수막염(G02.1*)                            | B37.5+  |
|                      |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 B38.4+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 G03     |
|                      |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4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 G05     |
|                      | - 결핵성 수막뇌염(G05.0*)                          | A17.81+ |
|                      |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 A85.1+  |
|                      |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 A85.0+  |
|                      |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 B00.4+  |
|                      |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 B05.0+  |
|                      | - 볼거리뇌염(G05.1*)                             | B26.2+  |
|                      | - 수두뇌염(G05.1*)                              | B01.1+  |
|                      | - 대상포진뇌염(G05.1*)                            | B02.0+  |
|                      |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G05.1*, G02.0*, G05.1*) | B06.0+  |
|                      |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G01*, G05.0*)           | A32.1+  |
|                      |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G06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G07     |
|                      | - 아메바성 뇌농양(G07*)                            | A06.6+  |
|                      | - 수막결핵종(G07*)                               | A17.1+  |
|                      |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 A17.80+ |
|                      |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G07*)                         | A17.88+ |
|                      |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 G08     |
|                      |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 G09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파킨슨병           | 파킨슨병<br>이차성 파킨슨증                                                                       | G20<br>G21                              |
| 다발경화증          | 다발경화증                                                                                  | G35                                     |
| 자율신경계통<br>의 장애 |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 G90                                     |
| 대동맥류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I71                                     |
| 폐질환            | 폐기종<br>기타 만성 폐색성 폐질환<br>기관지확장증<br>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br>흉막의 기타 질환                       | J43<br>J44<br>J47<br>J85~J86<br>J90~J94 |
| 급성 췌장염         | 급성 췌장염                                                                                 | K85                                     |
| 췌장질환           | 췌장의 기타 질환<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br>-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br>- 볼거리췌장염(K87.1*) | K86<br>K87<br>B25.2+<br>B26.3+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40】 다빈도20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다빈도20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D30                                                                                 |
| 후각특정질환         | 혈관운동성 및 알러지성 비염<br>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br>코폴립<br>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 J30<br>J31<br>J33<br>J34                                                            |
|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 편도주위 농양<br>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및 후두의 질환<br>상기도의 기타 질환                                                                                                                              | J36<br>J37<br>J38<br>J39                                                            |
| 사구체질환          | 급성 신염증후군<br>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br>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br>만성 신염증후군<br>신증후군<br>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br>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동반한 고립된 단백뇨<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br>(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br>- 사구체질환 동반(N08.5*) | N00<br>N01<br>N02<br>N03<br>N04<br>N05<br>N06<br>N07<br>N08<br>(N08.3제외)<br>M32.13+ |
| 신세뇨관-간질질환      |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br>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br>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br>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br>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br>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br>-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N16.4*)             | N10<br>N11<br>N12<br>N13<br>N14<br>N15<br>N16<br>M32.13+                            |
| 방광의결석          | 방광의 결석                                                                                                                                                                                        | N21.0                                                                               |
|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br>상세불명의 신장위축<br>원인불명의 작은 신장<br>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br>- 신장의 결핵(N29.1*)<br>- 요관의 결핵(N29.1*)                                              | N25<br>N26<br>N27<br>N28<br>N29<br>A18.10+<br>A18.18+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비뇨계통의<br>기타 질환         | 방광염<br>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br>방광의 기타 장애<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br>비뇨계통의 기타 장애<br>-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br>(결핵성 방광염(A18.11+)제외)<br>(스트레스요실금 제외)<br>(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 N30<br>N31<br>N32<br>N33<br>N37<br>B37.40+<br>N39<br>(N33.0제외)<br>(N39.3제외)<br>(N39.4제외)                                                                                                                                                       |
| 유방의<br>장애              | 양성 유방형성이상<br>유방의 염증성 장애<br>유방의 비대<br>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br>유방의 기타 장애                                                                                                                                                                                                                                                                                                                                                                                       | N60<br>N61<br>N62<br>N63<br>N64                                                                                                                                                                                                                |
| 눈 및<br>눈부속기관<br>의 특정질환 |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br>- 결핵성 상공막염(H19.0*)<br>- 결핵성 간질각막염(H19.2*)<br>- 결핵성 각막결막염(간질성, 플릭텐성)(H19.2*)<br>- 홍채섬모체염(H22.0*)<br>- 홍채염(H22.0*)<br>- 전방포도막염(H22.0*)<br>- 각막염(H19.1*)<br>- 각막결막염(H19.1*)<br>- 각막상피염(H19.1*)<br>- 간질각막염(H19.1*)<br>- 각막내피염(H19.1*)<br>-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br>- 유행성 각막결막염(H19.2*)<br>- 조선소눈병(H19.2*)<br>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br>- 결핵성 맥락망막염(H32.0*)<br>(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br>(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br>(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br>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 H15~H22<br>A18.5+<br>A18.5+<br>A18.5+<br>B00.50+<br>B00.50+<br>B00.50+<br>B00.51+<br>B00.51+<br>B00.51+<br>B00.51+<br>B00.51+<br>B00.51+<br>B30.0+<br>B30.0+<br>B30.0+<br>H30~H36<br>A18.5+<br>(H35.3제외)<br>(H35.02제외)<br>(H36.0제외)<br>H46~H48 |
| 특정 부위의<br>탈장           | 대퇴탈장<br>배꼽탈장<br>복벽탈장<br>횡격막탈장<br>기타 복벽탈장<br>상세불명의 복벽탈장                                                                                                                                                                                                                                                                                                                                                                                               | K41<br>K42<br>K43<br>K44<br>K45<br>K46                                                                                                                                                                                                         |
| 비감염성                   | 크론병[국소성 장염]                                                                                                                                                                                                                                                                                                                                                                                                                                          | K50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장염 및<br>결장염      | 궤양성 대장염<br>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 K51<br>K52                            |
| 특정<br>장질환        | 장의 혈관장애<br>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색<br>장의 게실병                                      | K55<br>K56<br>K57                     |
| 복막의<br>질환        | 복막의 질환<br>(결핵성 복막염 제외)<br>- 기타 클라미디아질환(K67.0*)                                  | K65~K67<br>(K67.3제외)<br>A74.8+        |
| 척추변형             |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br>척추측만증<br>척추골연골증<br>기타 변형성 등병증                                  | M40<br>M41<br>M42<br>M43              |
| 척추병증             | 강직척추염<br>기타 염증성 척추병증<br>척추증<br>기타 척추병증                                          | M45<br>M46<br>M47<br>M48              |
| 추간판장애<br>(디스크질환) | 경추간판장애<br>기타 추간판장애<br>-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br>(M51.1+)                      | M50<br>M51<br>G55.1*                  |
| 안면<br>신경장애       | 삼차신경의 장애<br>안면신경장애<br>기타 뇌신경의 장애                                                | G50<br>G51<br>G52                     |
| 단일신경<br>병증       | 팔의 단일신경병증<br>다리의 단일신경병증<br>기타 단일신경병증<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br>(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 | G56<br>G57<br>G58<br>G59<br>(G59.0제외) |
| 하지의 정맥류          | 하지의 정맥류                                                                         | I83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41】 남성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남성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                                       | I00 ~ I02 |
|                      |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 I05 ~ I09 |
|                      | 허혈심장질환                                         | I20 ~ I25 |
|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I26 ~ I28 |
|                      | 기타 형태의 심장병                                     | I30 ~ I52 |
|                      | - 수막구균성 심장병 등 (I32.0*, I39.8*, I41.0*, I52.0*) | A39.5+    |
|                      | - 칸디다심내막염(I39.8*)                              | B37.6+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 ~ I69 |
| 고혈압성<br>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0       |
|                      | 고혈압성 심장병                                       | I11       |
|                      | 고혈압성 신장병                                       | I12       |
|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I13       |
|                      | 이차성 고혈압                                        | I15       |
|                      | 고혈압성 뇌병증                                       | I67.4     |
|                      | 고혈압성 망막병증                                      | H35.02    |
| 당뇨병                  | 1형 당뇨병                                         | E10       |
|                      | 2형 당뇨병                                         | E11       |
|                      |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 E12       |
|                      | 기타명시된 당뇨병                                      | E13       |
|                      | 상세불명의 당뇨병                                      | E14       |
|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 G59.0     |
|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 G63.2     |
|                      | 당뇨병성 백내장                                       | H28.0     |
|                      | 당뇨병성 망막병증                                      | H36.0     |
|                      | 당뇨병성 관절병증                                      | M14.2     |
|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N08.3     |
| 위궤양 및<br>십이지장궤양      | 위궤양                                            | K25       |
|                      | 십이지장궤양                                         | K26       |
|                      |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7       |
| 신부전                  | 신부전                                            | N17~N19   |
| 신장 및<br>요관의<br>기타 장애 | 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 N25       |
|                      |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 N26       |
|                      |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 N27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N28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N29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비뇨계통의<br>기타 질환     | 방광염                               | N30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 N31              |
|                    | 방광의 기타 장애                         | N32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 N33              |
|                    |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 N37              |
|                    | - 칸디다 방광염 및 요도염(N37.0*)           | B37.40+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br>(스트레스요실금 제외) | N39<br>(N39.3제외) |
|                    |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 (N39.4제외)        |
| 생식기질환              | 음낭수종 및 정맥류                        | N43              |
|                    | 고환의 염전                            | N44              |
|                    | 고환염 및 부고환염                        | N45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         | N49              |
|                    |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                     | N50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장애           | N51              |
|                    | - 전립선의 결핵(N51.0*)]                | A18.13+          |
|                    | - 기타 남성 생식기관의 결핵(N51.0*)          | A18.14+          |
| 남성<br>생식기의<br>양성종양 | - 편모충성 전립선염(N51.0*)               | A59.01+          |
|                    | - 볼거리고환염(N51.1*)                  | B26.0+           |
|                    |                                   |                  |
|                    |                                   |                  |
| 남성<br>생식기의<br>양성종양 |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D29              |
| 비뇨기관의<br>양성신생물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D30              |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42】 여성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심장질환          | 급성 류마티스열<br>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br>허혈심장질환<br>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br>기타 형태의 심장병<br>- 수막구균성심장병등(I32.0*, I39.8*, I41.0*, I52.0*)<br>- 칸디다심내막염(I39.8*)       | I00 ~ I02<br>I05 ~ I09<br>I20 ~ I25<br>I26 ~ I28<br>I30 ~ I52<br>A39.5+<br>B37.6+     |
| 뇌혈관질환         | 뇌혈관 질환                                                                                                                                         | I60 ~ I69                                                                             |
| 고혈압성 질환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br>고혈압성 심장병<br>고혈압성 신장병<br>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br>이차성 고혈압<br>고혈압성 뇌병증<br>고혈압성 망막병증                                                      | I10<br>I11<br>I12<br>I13<br>I15<br>I67.4<br>H35.02                                    |
| 당뇨병           | 1형 당뇨병<br>2형 당뇨병<br>영양실조 관련 당뇨병<br>기타 명시된 당뇨병<br>상세불명의 당뇨병<br>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br>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br>당뇨병성 백내장<br>당뇨병성 망막병증<br>당뇨병성 관절병증<br>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 E10<br>E11<br>E12<br>E13<br>E14<br>G59.0<br>G63.2<br>H28.0<br>H36.0<br>M14.2<br>N08.3 |
| 위궤양 및 십이지장 궤양 | 위궤양<br>십이지장궤양<br>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K25<br>K26<br>K27                                                                     |
| 신부전           | 신부전                                                                                                                                            | N17 ~ N19                                                                             |
| 생식기질환         |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br>- 자궁경부의 결핵(N74.0*)<br>-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 등(N74.1*)<br>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br>(습관적 유산자 제외)<br>(여성불임 제외)<br>(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 N70 ~ N77<br>A18.15+<br>A18.16+<br>N80 ~ N95                                          |

| 구 분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유방의 장애       | 양성 유방형성이상                 | N60  |
|              | 유방의 염증성 장애                | N61  |
|              | 유방의 비대                    | N62  |
|              |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N63  |
|              | 유방의 기타 장애                 | N64  |
| 유방의 양성종양     | 유방의 양성 신생물                | D24  |
| 여성 생식기의 양성종양 | 자궁의 평활근종                  | D25  |
|              |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 D26  |
|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D27  |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 D28  |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 D30  |

당뇨병(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43】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이란 유방의 악성신생물(C50)로 인한 유방수술로서 국제 의료행위 분류표(ICD.9-CM)에 의한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 대상이 되는 수술            | 수술 및 처치코드 |
|----------------------|-----------|
| 유방절개술                | 85.0      |
| 유방 조직의 절제 또는 파괴      | 85.2      |
| 축소 유방성형술 및 피부밀 유방절제술 | 85.3      |
| 유방절제술                | 85.4      |
| 확대 유방성형술             | 85.5      |
| 유방고정술                | 85.6      |
| 유방의 전체 재건            | 85.7      |
| 유방의 기타 수복 및 성형술      | 85.8      |
| 유방의 기타 수술            | 85.9      |
| ※ 단, 아래 의료 행위는 제외    |           |
| - 유방의 흡인             | (85.91)   |
| - 유방내 치료약물의 주입       | (85.92)   |

### 【별표44】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생식기암 및 여성생식기의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1.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 2. 여성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 자궁내막의 제자리암종                  | D07.0   |
| 외음의 제자리암종                    | D07.1   |
| 질의 제자리암종                     | D07.2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3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45】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자궁적출수술비의 자궁적출수술이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에 의한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 대상이 되는 수술                                           | 수술 및 처치코드 |
|-----------------------------------------------------|-----------|
| 아전적 복식 자궁절제술(Subtotal abdominal hysterectomy)       | 68.3      |
| 전체적 복식 자궁절제술(Total abdominal hysterectomy)          | 68.4      |
| 질식 자궁절제술(Vaginal hysterectomy)                      | 68.5      |
| 근치적 복식 자궁절제술(Radical abdominal hysterectomy)        | 68.6      |
| 근치적 질식 자궁절제술(Radical vaginal hysterectomy)          | 68.7      |
| 골반 장기 적출술(Pelvic evisceration)                      | 68.8      |
| 기타 및 상세불명 자궁절제술(Other and unspecified hysterectomy) | 68.9      |

**【별표46】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충수염(맹장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
| 충수의 질환  | K35~K38 |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47】알츠하이머병 분류표

“치매로 진단확정되다”는 것은 다음의 1.과 2.에 모두 해당되는 “치매”임을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해서 진단확정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1.에 의한 기질성장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여기에서 “치매”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 항목            | 분류번호 |
|------------------|------|
| I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II . 알츠하이머병      | G30  |

제8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8】 파킨슨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파킨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분류항목                  | 분류번호  |
|-----------------------|-------|
| I . 파킨슨병              | G20   |
| II . 파킨슨병에서의 치매(G20+) | F02.3 |

제8차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49】유방절제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절제수술비의 유방절제수술이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에 의한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 대상이 되는 수술       | 수술 및 처치코드 |
|-----------------|-----------|
| 1. 편측단순유방절제술    | 85.41     |
| 2. 양측단순유방절제술    | 85.42     |
| 3. 편측확대유방절제술    | 85.43     |
| 4. 양측확대유방절제술    | 85.44     |
| 5. 편측근치적유방절제술   | 85.45     |
| 6. 양측근치적유방절제술   | 85.46     |
| 7. 편측확대근치적유방절제술 | 85.47     |
| 8. 양측확대근치적유방절제술 | 85.48     |

# 【별표50】 1~5종수술 분류표

## I. 일반 질병 및 재해 치료목적의 수술

| 구분                                                                                                                                                        | 수술명                                                                                                                                   | 수술<br>종류 |
|-----------------------------------------------------------------------------------------------------------------------------------------------------------|---------------------------------------------------------------------------------------------------------------------------------------|----------|
| 피부, 유방의<br>수술                                                                                                                                             | 1. 피부이식수술(25cm <sup>2</sup> 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 3        |
|                                                                                                                                                           | 2. 피부이식수술(25cm <sup>2</sup> 미만인 경우)                                                                                                   | 1        |
|                                                                                                                                                           |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3        |
|                                                                                                                                                           |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br>[단, 치료목적의 Mam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근골(筋骨)의<br>수술<br>[발정술(拔釘術)<br>등 내고정물<br>제거술은<br>제외함][치(齒)·<br>치은·<br>치근(齒根)·<br>치조골(齒槽骨)<br>의 처치,<br>임플란트(Implant)<br>등 치과 처치<br>및 수술에<br>수반하는 것은<br>제외함] | 5. 골(骨) 이식수술                                                                                                                          | 2        |
|                                                                                                                                                           |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br>[비골(鼻骨)· 비중격(鼻中隔)·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 3        |
|                                                                                                                                                           | 7. 비골(鼻骨) 수술<br>[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수면중 무호흡 수술은 제외]                                                                                      | 1        |
|                                                                                                                                                           |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 2        |
|                                                                                                                                                           |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 3        |
|                                                                                                                                                           |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 2        |
|                                                                                                                                                           |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          |
|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br>[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 1        |
|                                                                                                                                                           |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 3        |
|                                                                                                                                                           |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것]                                                                                 | 3        |
|                                                                                                                                                           |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
|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 1        |
|                                                                                                                                                           |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2        |
|                                                                                                                                                           | 14. 근(筋), 건(腱), 인대(靱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 1        |
| 호흡기계,<br>흉부(胸部)의<br>수술                                                                                                                                    |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 1        |
|                                                                                                                                                           |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 3        |

| 구분                     | 수술명                                                                               | 수술<br>종류 |
|------------------------|-----------------------------------------------------------------------------------|----------|
|                        |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 1        |
|                        |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br>[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 4        |
|                        | 19. 폐장(肺臟) 이식수술<br>[수용자(受容者)에 한함]                                                 | 5        |
|                        |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 3        |
|                        |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4        |
| 순환기계,<br>비장(脾腸)의<br>수술 |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 3        |
|                        |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 1        |
|                        |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        |
|                        |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4        |
|                        |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 5        |
|                        |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 5        |
|                        |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 3        |
|                        |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 3        |
| 소화기계의<br>수술            | 30. 이하선 절제수술                                                                      | 3        |
|                        |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 2        |
|                        |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 1        |
|                        |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br>[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 4        |
|                        |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br>[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        |
|                        |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        |
|                        | 35. 간장(肝臟), 췌장(胰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4        |
|                        |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3        |
|                        |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 5        |
|                        |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br>(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 | 5        |

| 구분                                    | 수술명                                                                                                      | 수술<br>종류 |
|---------------------------------------|----------------------------------------------------------------------------------------------------------|----------|
|                                       | 외함)                                                                                                      |          |
|                                       |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 1        |
|                                       |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 2        |
|                                       |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 2        |
|                                       |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 1        |
|                                       |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br>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 4        |
|                                       |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 1        |
|                                       |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 4        |
|                                       |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 2        |
|                                       |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 1        |
| 비뇨기계 ·<br>생식기계의 수술<br>(인공임신중절수술은 제외함) |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 5        |
|                                       |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 3        |
|                                       | 50. 고환(辜丸), 부고환(副辜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 2        |
|                                       | 51. 음낭관혈수술                                                                                               | 1        |
|                                       |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 2        |
|                                       |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 1        |
|                                       | 55. 질탈(腔脫)근본수술                                                                                           | 1        |
|                                       |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 5        |
|                                       |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 3        |
| 내분비기계의<br>수술                          |                                                                                                          |          |

| 구분                           | 수술명                                                                                                                | 수술<br>종류 |
|------------------------------|--------------------------------------------------------------------------------------------------------------------|----------|
|                              |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 4        |
| 신경계의<br>수술                   |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br>[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 5        |
|                              |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 2        |
|                              |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 4        |
|                              |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 3        |
| 시각기의<br>수술<br>[약물주입술은<br>제외] |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안검내반증 제외)                                                                                       | 1        |
|                              |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 1        |
|                              |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 2        |
|                              |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 2        |
|                              |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 1        |
|                              |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 2        |
|                              |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 2        |
|                              |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 3        |
|                              |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 1        |
|                              |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br>[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
| 시각기의<br>수술<br>[약물주입술은<br>제외] |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br>[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br>[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
|                              |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 3        |
|                              | 76. 안와내양절제수술                                                                                                       | 3        |
|                              |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 1        |
|                              | 78. 안근(眼筋)관혈수술                                                                                                     | 1        |

| 구분                                              | 수술명                                                                                                                                                                  | 수술<br>종류 |
|-------------------------------------------------|----------------------------------------------------------------------------------------------------------------------------------------------------------------------|----------|
| 청각기(聽覺器)<br>의 수술                                |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br>[고막 패치술은 제외]                                                                                                                                   | 2        |
|                                                 |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 2        |
|                                                 |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 2        |
|                                                 |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br>[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br>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br>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1        |
|                                                 |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 3        |
| 상기 이외의<br>수술<br>[검사, 처치,<br>약물주입요법은<br>포함하지 않음] |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 3        |
|                                                 |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 3        |
|                                                 |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 2        |
|                                                 |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br>[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br>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br>복 지급이 가능합니다.]<br>*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 2        |
|                                                 |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br>(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br>[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br>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br>지급이 가능합니다.] |          |
|                                                 | 88-1. 뇌, 심장                                                                                                                                                          | 3        |
|                                                 |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br>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 2        |
|                                                 |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 1        |

(주)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  
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  
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 II.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 수술명                                                                                                                          | 수술종류 |
|------------------------------------------------------------------------------------------------------------------------------|------|
|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br>단, 기타피부암(C44) 제외<br>[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함]      | 5    |
| 1-1. 기타피부암(C44)                                                                                                              | 3    |
| 2.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br>[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
|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br>[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

(취)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I.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III.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 수술종류 |
|-----------------------------------------------------------------------------------------------------------------------------------------------|------|
|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br>[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3    |
|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3    |

(취)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수술 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수술 분류표>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수술 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 1~5종수술 분류표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 ~ 5종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수술 분류표> 중 '일반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

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 1) 미용 성형상의 수술
- 2)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3)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4)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查) 등]

【별표51】특정부위 분류표

| 구분 | 특 정 부 위                                                |
|----|--------------------------------------------------------|
| 1  | 위, 십이지장                                                |
| 2  |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
| 3  | 대장(맹장, 직장 제외)                                          |
| 4  | 직장                                                     |
| 5  | 항문                                                     |
| 6  | 간                                                      |
| 7  | 담낭(쓸개) 및 담관                                            |
| 8  | 췌장                                                     |
| 9  | 비장                                                     |
| 10 |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
| 11 |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
| 12 |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
| 13 | 식도                                                     |
| 14 |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
| 15 |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
| 16 |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
| 17 | 신장                                                     |
| 18 | 부신                                                     |
| 19 | 요관, 방광 및 요도                                            |
| 20 | 음경                                                     |
| 21 | 질 및 외음부                                                |
| 22 | 전립선                                                    |
| 23 | 유방(유선 포함)                                              |
| 24 |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
| 25 |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
| 26 | 난소 및 난관                                                |
| 27 |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
| 28 | 갑상선                                                    |

| 구분 | 특 정 부 위                                               |
|----|-------------------------------------------------------|
| 29 | 부갑상선                                                  |
| 30 |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
| 31 |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
| 32 |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
| 33 |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
| 34 |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
| 35 | 천골(영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
| 36 | 왼쪽 어깨                                                 |
| 37 | 오른쪽 어깨                                                |
| 38 |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
| 39 |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
| 40 |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
| 41 |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
| 42 | 왼쪽 고관절                                                |
| 43 | 오른쪽 고관절                                               |
| 44 |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
| 45 |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
| 46 |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
| 47 |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
| 48 |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
| 49 | 쇄골                                                    |
| 50 | 늑골(갈비뼈)                                               |

## 【별표52】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5-309호, 201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항 목 명                                                                   |
|----------------------|---------------------------------------------------------------|-------------------------------------------------------------------------|
| 1. 심장질환              | I00 ~ I02<br>I05 ~ I09<br>I20 ~ I25<br>I26 ~ I28<br>I30 ~ I52 | 급성 류마티스열<br>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br>허혈심장질환<br>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br>기타 형태의 심장병     |
| 2. 뇌혈관질환             | I60 ~ I69                                                     | 뇌혈관 질환                                                                  |
| 3. 당뇨병               | E10 ~ E14<br>O24                                              | 당뇨병<br>임신중 당뇨병                                                          |
| 4. 고혈압성질환            | I10 ~ I13, I15                                                | 고혈압성질환                                                                  |
| 5. 결핵                | A15 ~ A19<br>B90                                              | 결핵<br>결핵의 후유증                                                           |
| 6. 담석증               | K80                                                           | 담석증                                                                     |
| 7. 요로결석증             | N20<br>N21<br>N23                                             | 신장 및 요관의 결석<br>하부 요로의 결석<br>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
| 8. 골관절증 및<br>류마티스관절염 | M05<br>M06<br>M08<br>M15 ~ M19                                |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br>기타 류마티스 관절염<br>연소성 관절염<br>관절증                        |
| 9. 변형성 등병증           | M40 ~ M43                                                     | 변형성 등병증                                                                 |
| 10. 척추병증             | M45 ~ M49                                                     | 척추병증                                                                    |
| 11. 기타 등병증           | M50 ~ M54                                                     | 기타 등병증                                                                  |
| 12. 골반염              | N73<br>N74                                                    | 기타 여성골반염증질환<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골반염증장애                                    |
| 13. 자궁내막증            | N80                                                           | 자궁내막증                                                                   |
| 14. 자궁의 평활근종         | D25                                                           | 자궁의 평활근종                                                                |
| 15. 하지의 정맥류          | I83                                                           | 하지의 정맥류                                                                 |
| 16. 임신중독증            | O11<br>O12<br>O13                                             |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br>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br>[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br>임신성[임신-유발]고혈압 |

| 대 상 질 병                  | 분류번호                    | 항 목 명                                                  |
|--------------------------|-------------------------|--------------------------------------------------------|
|                          | O14<br>O15              | 전자간<br>자간                                              |
| 17. 통풍                   | E79<br>M10              | 퓨린 및 피리미딘 대사장애<br>통풍                                   |
| 18. 지질단백질대사장애및<br>기타 지질증 | E78                     |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
| 19. 사시                   | H49<br>H50<br>H51       | 마비성 사시<br>기타 사시<br>양안운동의 기타 장애                         |
| 20. 탈장                   | K40 ~ K46<br>N43        | 탈장<br>음낭수종 및 정맥류                                       |
| 21. 유산                   | N96<br>O00 ~ O08<br>O20 | 습관적 유산자<br>유산된 임신<br>초기임신중 출혈                          |
| 22. 복막의 질환               | K65 ~ K67               | 복막의 질환                                                 |
| 23. 골다공증                 | M80<br>M81<br>M8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br>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br>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
| 24. 천식                   | J45<br>J46              | 천식<br>천식지속 상태                                          |
| 25. 난소의 양성신생물            | D27                     | 난소의 양성 신생물                                             |
| 26. 바르톨린선의 질환            | N75                     | 바르톨린선의 질환                                              |
| 27. 여성 생식관의 폴립           | N84                     | 여성 생식관의 폴립                                             |
| 28. 백내장                  | H25<br>H26              | 노년백내장<br>기타 백내장                                        |

제8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상기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상기 분류에 포함합니다.

# 【별표5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구분                    | 기간                              | 지 급 이 자                 |
|-----------------------|---------------------------------|-------------------------|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br>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br>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br>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가산이율(4.0%) |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br>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가산이율(6.0%) |
|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br>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br>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br>평균공시이율의 50%  |
|                       |                                 | 1년 초과기간 : 1%            |
|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br>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시간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무료전화 (080-860-3300)  
 - 무료전화 외 전화·서면·인터넷 신청 방법 : '다.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에 기재된 방법과 같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
| 신청<br>방법 | 전화  | 지역번호 없이 1566-3000, 1644-3000, 1644-2500      |
|          | 서면  | 우)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인의동, 더케이손해보험빌딩) |
|          | 인터넷 | www.educar.co.kr                             |

###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신용정보(주)/한국신용평가정보(주)/서울신용평가정보(주)/코리아크레딧뷰로(주)

### (3)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 규정

-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
| 02) 6670-8032<br>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br>(인의동, 더케이손해보험빌딩) | 02) 3702-8500<br>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6층<br>(수송동, 코리아리빌딩) | 1332<b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br>금융감독원 민원센터 |

##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를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지역번호 없이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모집질서 신고센터 안내

-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The-K손해보험)  
 ●전화: 1566-3000      ●인터넷: www.educar.co.kr



---

MEMO

---

